

제276차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월례연구발표회

2025. 10. 23.^목 15:00 교학대학 302강의실

제1발표 원불교 초기교단 관련 외부인사의 軌跡
: 불법연구회(1924~1948) 관련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_ 김귀성(혜광, 원광대 명예교수)

제2발표 원불교 군중승인의 역사와 의미 탐색
: 원불교 군중활동허가청원 백서를 중심으로

_ 강동현(원불교 군중교구)



원 불 교 사 상 연 구 원

원불교 초기교단 관련 외부인사의 軌跡

- 불법연구회(1924~1948) 관련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

김귀성(혜광)
원광대 명예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당시의 종교 관련 법규와 정책
- III. 교단 관련 대외 인사의 분류
- IV. 배경요인의 분석
- V. 요약 및 맺는말

I. 머리말

원불교 창립기인 불법연구회 관련 대·내외 인사는 주목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잊혀가는 편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관심의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다. 불법연구회 시대(1924년--1948년)는 국가적으로는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기에 해당한다. 특히 1935년부터 1945년까지는 교단사에 있어서 격동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조선의 종교에 비해 불법연구회는 일제에 저항이나 친일을 할 정도의 제반 기반이 형성되지도 않았다¹⁾.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불법연구회가 노출된 것은 『조선의 유사종교』(村山智順, 1935)에 의해서이다. 이 보고서는 불법연구회를 불교계 유사종교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법연구회가 일제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안창호(安昌浩)의 총부방문(1936) 이후이다. 그 후 총부 주재소 설치(1937), 미즈하시(三橋孝一郎) 경무국장의 불법연구회의 황은·불은(皇恩·佛恩) 사찰(1938), 국방헌금 강요(1937-1944), 송벽조(宋碧照)의 천황 모독 사건(1939), 《회

1) 친일 불교에 대한 참회 반성의 흔적이 발견된다(임혜봉, 『친일불교론』 상·하, 민족사, 1993).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는 각성의 의미를 띤 성찰일 뿐이다”(머리말 27쪽)라고 했고. 심지어 일본의 조동종 승려인 이치노헤쇼코(一戶彰晃)는 『조선침략참회기』(장옥희 옮김, 동국대출판부, 2013)를 통해 일본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東京: 皓星社, 2012)고 물으면서 “지금까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금기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과거를 검증하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5쪽)라고 했다.

보》 정간(1940), 『정전』 발간 청원에 황도 선양 정신없다고 불허(1942), 일본식 창씨개명의 강요(1942-1943), 『불교정전』 발행(1943),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1943)과 광복 후 정산종사의 김구(金九) 방문(1945)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교단과 관련된 대외 인사는 알려진 것에 비해 다양하고도 많은 편이다. 관련 인사로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불법연구회를 방문한 안창호와 이에 동행한 동아일보 이리지국의 배헌 기자 등 언론인, 소태산 대종사의 치병을 도운 이리 삼산병원장 김병수(金炳洙)²⁾를 비롯한 이리병원의 의료진(文治淳 원장·산부인과 의사, 내과 의사 와카스키(若杉鼎)(《조선일보》, 1938.8.7) 과 이리경찰서장이었던 가와무라(河村正美)를 비롯한 일제 하의 경찰과 검사·판사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 열반 시 의식에 참여한 익산지역의 불교 칠종(七宗)승려 등과 승려(김태흡, 上野舜頌), 불교계 언론인 나카무라젠타로(中村健太郎), 일본군 및 미군 관련 인사(17방면군 護鮮軍 160사단, 464연대 및 兵事區 전주 지구 사령관 牧次郎 소장 및 미군), 정치인(안창호, 김구), 공무원 등 실로 다양하다. 나아가 이들의 국적(한국, 일본, 미국)도 직업군(경찰, 군, 공무원, 의료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정치인 등)도 다양하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광복 후 친일인사로 분류된 한국인³⁾도 발견된다, 그러나 불법연구회 시대 발행된 각종 교서 및 간행물을 비롯하여 『원불교 교사』, 『대종경 선외록』, 기타 유관 저서 및 논문, 신문 등에 나타난 교단 관련 외부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아예 확인조차 어려운 예도 없지 않다.

비록 『원불교 교사』에 나타나 있지만 시기, 배경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저서나 신문에 노출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당시를 기억하는 인물들과의 면담(interview)에 의한 이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접근을 질적 접근(Qualitative approach)이라 한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요컨대 이런 결과는 교단 안팎으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차검증은 사실관계의 경우는 신뢰할만한 당시의 문헌 자료나 후속연구 등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⁴⁾. 이런 노력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실처럼 인지되어 혼란이 재생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관련 외부 인사이지만 교단 안팎으로 노출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없지 않다.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지정된 기관인 사례도 있으며(영광·김제·이리경찰서 등) 현재 사실 여부에 대한 접근에 한계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업보고서》에 등장하는 일본인 인물들처럼 직접 교단과 관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제외하기도 했다⁵⁾. 그래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없지 않다.

2) 불법연구회 《會報》의 “위생” 난에 김병수는 三山生이라는 필명으로 10회 기고를 한 바 있다. 《會報》 38호(태중 위생에 대하여), 40호(初生兒 처지), 《회보》 41호(유아위생에 대하여), 《회보》 43, 44, 45, 46호, 47호(호열자에 대하여), 《회보》 50호(食物소화시간), 《회보》 55호(일광욕에 대하여) 등.

3)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육무철(648쪽), 송종태(347쪽) 등 친일경찰, 이영근(23쪽) 친일 언론인. 김태흡 친일승려(임해봉, 『친일불교론』, 하, 민족사,1993)등으로 각각 분류됨.

4) 예컨대 1919년 방언공사 완공 후 소태산 대종사가 영광경찰서에 소환 자금출처를 조사받았고 1주간 구금되었는데 당시 조사는 흥가 성을 가진 조선인 순사라고 하지만 『朝鮮總督府所屬官署及職員錄』(1910-1943)을 검색해 본 결과 순사, 간사는 제외되었고 영광경찰서 근무한 조선인 경찰은 홍순표(1925년 근무)만 확인되어 향후 심화된 대차검증이 요구됨.

5) 1928년(시창 13년 《사업보고서》:76) 1928년 10월 16일 “박대완의 제의로 창립연합단 가결되어

그러므로 교단 관련 외부인사는 가능한 교단 내외로 교차검증이 가능한 대상을 우선 연구의 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외부인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들 외부인사를 통한 당시 교단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먼저 이들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가능한 정확한 근거를 검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이들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평가와 교단 내의 그것 간에 모종의 차이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들 인물이 활동했던 시대인 일제강점기 및 미군기의 종교 관련 법규나 정책은 어떠했으며, 불법연구회 당시 교단 관련 외부인사들은 어떤 인사들인가를 유목화하여 분류하고, 다시 이들의 교단과 관련하여 평가적인 입장을 재분류하여 그 배경요인을 정리한 후 향후 이와 관련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초기교단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당시 이러한 대외 인사와 관련한 선행연구⁶⁾는 발견되지만 직접 대외 관련 인사를 대내외 자료와 대조 검색 정리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II. 종교 관련 법규와 정책

1. 종교탄압과 황민화 정책

일제강점기 조선에 있어서 일본종교 관련 법규는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1906), “포교규칙”(1915, 부령 제83호), “신사사원규칙”(1915, 부령제 82호), “신사에 관한 건”(1917, 부령 제21호), “신사규칙”(1936, 부령 제76호), “사원규칙”(1936, 부령 제80호)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불교 및 기독교 관련 법규로는 “사찰령”(1911, 제령 제7호) “포교규칙”(1915, 부령 제83호) 등이 발견된다. 그 밖에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각급 학교와 관련하여 일제는 “사립학교규칙”(1911) “개정 사립학교 규칙”(1915 부령 제24호), “축제일 당일 사립종교학교 學式예배에 관한 건”(1915.관통첩 제209호), “법인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정”(1912, 부령 제71호) 등을 적용했다.

이와 달리 조선총독부는 유교를 종교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여 관리, 지원과 교화의 주체화 즉 사회교화 단체로 취급했다⁷⁾. 따라서 “향교재산관리규정”(1910, 학부령 제2호) 등을 통해 통제했다. 이상의 공인된 종교단체(불교, 기독교, 신도, 유교 등)에 관한 법규와 달리 신종교 및 무속 등은

이리 일본인 니시모토히로히라(西本壽平:곡물상인)의 許에 桃木 나무 2백 본을 매입 회중 소유 前面土에 植付”/1941년 시창 26년 《사업보고서》:149)“1941년 12월 19일 기노시다(木下嶮) 상병 邑民葬, 1943년 시창 30년 《사업보고서》:159), 1943년 12월 16일 이리국민학교에서 육군 상병 오오스키(大杉)씨 읍민장“ 등에 나타난 일본인은 교단과 직접 관련도가 낮아 제외함. 심지어 총부주재소의 황의천, 小島京市 등은 순사직인 관계로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제외되어 교차검증이 불가능하여 제외함.

6) 안창호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김도영(2019), 박맹수(2018), 일제하의 교단 수난 관련 연구는 김정용(1999), 박용덕(1999), 장도영(2017), 김주용(2024) 등이 발견된다. 정산종사가 김구 주석을 만나 임정 지지를 선언한 내력 관련 연구로는 김귀성(2024) 등이 있음.

7)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1, 107쪽.

종교로 취급하지 않아 치안 차원에서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여 통제했다. 예를 들면 신종교 관련 법규로는 “보안법”(1907), “조선민사령”(1912), “조선형사령”(1912), “치안유지법”(1925), “집회 취체에 관한 건”(1910.8.23. 경무총감부령 제3호)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심지어 “유사종교해산령”(1936)을 발동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신종교는 종교 관련 법규의 적용 대상이라기보다는 민·형사상 취체(取締, 단속)의 대상으로 보아 단속과 처벌위주의 법규 및 정책을 적용했다. 한편 신종교를 유사종교라고 하면서도 공인된 종교에 적용했던 포교규칙을 준용하여⁸⁾, 일제는 포교규칙과 아울러 신종교 적용규칙을 모두 적용하는 이중 탄압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신종교 관련 주요 법규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1> 신종교 및 무속 관련 주요법규⁹⁾

법규 명칭	법규성격 및 반포시기	참 고 사 항
보안규칙	통감부령 제10호 1906.4.17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	통감부령 제 45호, 1906.11.17	
정치에 관한 집회 혹은 옥외다중 집합의 금지단속 금지(내각고시 제98호, 1910.8.24)	통감부 경무총감부령 3호 1910.8.24	
보안규칙	통감부령 제10호, 1906.4.17	
보안법	법률 제2호, 1907.7.27	
경찰범치벌령	통감부령 제44호, 1908.10.1	
종교통제안	총독부령 제83호	
한국에 있어서의 범죄즉결령	칙령 제240호, 1909.10.16.	
범죄즉결례	제령 제10호, 1910.12.15.	『조선총독부관보』 제90호
조선민사령	제령 제7호, 1912.3.18. 시행 4.1	
경찰범 처벌규칙	총독부령 제40호 1912.	
조선형사령	제령 제11호, 1912.3.18. 시행 4.1.	황실불경죄 제73-76조 『조선총독부관보』 제2975호
조선대형령	제령 제13호, 1912.3.28	
포교규칙	부령 제3호, 1915.8.16.	시행1915.10.1/폐지1962.1.20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 건	제령 제7호, 1919.4.15	
치안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	칙령 제403호, 1923.9.7	
치안유지법	법률 제46호, 1925.5.12	동 개정, 법률 제54호, 1941.5.15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제령 제16호, 1936.12.12	『조선총독부관보』 제2975호
종교단체법	일본 법률 제77호, 1939.4.8	일본국회 통과 전문37조
조선사상범구급령	제령 제8호, 1941.2.12	『조선총독부관보』 제4215호

신종교 단속을 강화한 배경으로는 중일전쟁(1937)으로 인한 사상통제의 강화 필요성의 대두, 일본 본국의 신종교 단속, 『조선의 유사종교』 발행(1935), 백백교사건(1937) 등을 들 수 있다¹⁰⁾. 조선총독부 중무행정 역시 지방의 경우는 1938년에 내무부 학무과가 주관¹¹⁾하되 경찰부

8) 포교규칙 제1조 ‘본령에 의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도, 불교, 기독교를 일컫는다’, 제15조 ‘조선 총독은 필요한 경우에 유사종교 단체라고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해 본령을 준용하는 단체는 이를 고시한다’(《조선총독부관보》 제 92, 154-155쪽).

9) 성주현· 고병철, 앞의 책, 103-105쪽.

10) 문지현, 「전시체제기 일제의 신종교정책과 신종교 교단 검거사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

가 시행하기도 했다. 특히 종교취체와 관련해서는 고등경찰과에서 담당했다.

한편 일본 국회를 통과한 ‘종교단체법’은 1899년 신도·불교·기독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종교자유에 입각한 것과 종파 본위가 아닌 사원 본위로 입안하며 정부 문부성 내에 종교지도조사위를 설치했다. 종교 제도 조사위는 2차 수정안(1927), 제3차 수정안(1929), 제4차 수정안(1935)을 각각 제안했으나 기각되다 1939년 종교 단체법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종교 단체법’(1939-1945)의 조선에서 시행 여부를 두고 조선총독부 종교제도조사위를 설치하여 검토하기로 하고¹²⁾ 그 후 이 법규의 조선 내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종교 단체법’의 조선 시행에 대한 사설에서¹³⁾ 처럼 조선 내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선의 제반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유사종교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제언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체의 종교 유사단체에 대한 취체는 1934년부터 가중되기 시작했다¹⁴⁾.

일제가 불법연구회에 대한 감시와 단속, 탄압을 가한 사례는 다양하지만, 그 주요한 배경은 대체로 남녀문제, 재정, 그리고 사상과 관련된 요인이 주를 이뤘다¹⁵⁾. 특히 조선의 유사종교 발행 이후 불법연구회를 불교계의 유사종교로 분류하고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목했고 안창호의 총부 방문 이후 총부 구내에 주재소 설치, 송벽조의 천황모독사건 등이 일어남으로써 일제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연구회를 비롯한 신종교와 관련해서 일제가 적용한 법규와 정책은 주로 보안법, 조선형사령(불경죄: 1939년 천황모독사건),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 민사령 등 신종교에 적용된 법규(<표 1>)가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체제기에 일제에 의해 검거된 신종교는 총 39건이었고 특히 천황불경죄 검거 인원은 89명(1937-1939년)이었다¹⁶⁾. ‘황실에 대한 불경죄’는 형법 제73조,74조,75조,76조 형사소송법 제28조 3항 동 제130조 1항이 각각 적용되었다¹⁷⁾. 일제 말기 황도불교는 단순한 일본식 불교로의 이행만이 아니라 종교를 천황의 지도 아래에 둠으로써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이데올로기를 실행하기 위한 기제로 삼았다. 비록 교단 내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의 교당, 교무, 교도 수 등과 차이는 있지만, 일제하 경찰이 불법연구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단면으로 1937년말 기준 종교유사단체에 불교계의 불법연구회 현황(포교소2, 포교사2, 조선인 신도 683명)을 파악하기 시작한 점¹⁸⁾이 확인된다.

2. 편향된 종교정책(미 군정기)

문, 2008, 23쪽.

11) 예컨대 『전라북도교육급종교요람』(1938) 발행소는 전라북도교육회로 되어 있는데 전북 교육회의 회장은 내무부장이 부회장은 학무과장이 겸직한다고 되어 있다(전라북도 교육회 회칙:1937.12 개정 제 10조). 그리하여 당시 내무부장은 門脇黙一, 부회장은 栢木宏二, 石川頼彦 등 이었다.

12) 《조선일보》, 1939.6.3.

13) 《동아일보》, 1940.2.10.

14) 《동아일보》, 1934.7.27. 종교유사단체 금후 엄금취체 방침, 《조선일보》, 1937.5.14. 경찰부장 회의에서 南次郎 총독 종교유사단체에 대한 훈시, 《조선일보》, 1939.3.3. 전국 검사 회동 유사종교단체 엄금취체 등 보도.

15) 『대중경』 실시품 14장, 『원불교교사』 94, 106-108쪽. 『대중경선외록』 21, 교단수난장.

16)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不敬罪の關する調査’, 《思想彙報》 21, 1939, 33-38쪽.

17) 조소연,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불경죄 처벌과 운용」,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7, 2-40쪽.

18) 전라남도 경찰부, 『昭和13年 警務要覽』 56쪽(민족문제연구소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 67권, 한국학술정보, 2001)

광복 직후 미 태평양사령관인 맥아더(Douglas MacArther) 장군의 명령에 의해 서남태평양사령부(GHSPA)가 작성한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115(전주-군산)에도 미군의 한국종교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한국의 주요한 종교는 유교, 불교, 기독교이다. 여기에 무속도 있다, 기독교는 신자 수는 적지만 한국에서 가장 능동적인 종교이고 예수교회들은 한국문화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이다¹⁹⁾’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한 후 미 군정기(1945-1948)에 종교 관련 법규의 개폐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일부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건“(제194호 법률)일 비롯하여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 및 허가“(법령제 19호 법률 제 131호,4283.4.27./법률 제 88호) 등 관련 법규는 확인되지만 일제강점기 종교 관련 법령에 대한 처리 및 새로운 법령의 제정은 상대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제183호 필요없는 법령의 폐지). 다만, 종교 관련 행정 관련 주요 사항만 드러나 이를 요약화하면 다음 <표 2>와 같다²⁰⁾.

<표2> 미 군정기의 종교 행정 사항

제 목	주요 행정 사항	년월일	참 고
11-1 신도에 대한 개요	神道 개관(Bureau Edu,Cul),	1945.11.19	
11-2 종교과와 군목실	Locard대위에게 보내는 메모	1945.12.11	
11-3 종교과의 임무와 활동	관계자에게 보내는 학무국 종교부의 책임과 활동	1945.12.11	
11-4 종교과의 임무	광복 이전 학무국 종교과 책임	1945.12.16	
11-5 미 군정 직후의 종교과 활동	미 군정 이후 학무국 종교 담당계활동	1945.12.17	
11-6 종교자유를 위한 권고	교회 재산 포함한 종교적 자유 보호 위한 등록시 절차(자문)	미상	
11-7 문교부의 종교계	문교부 산하의 종교계 폐지	1946.4.9	
11-8 사원행정에 대한 설명	불교사찰 행정	1947.4.14	
11-9 북한 교회의 청년운동	북한 교회상황	1947.6.4	
11-10 남산신사의 파괴	남산 신사 파괴	1947.8	법령제 194호
11-11 윤세구 과장과 면담	남산신궁 파괴 및 종교 관련 논쟁 해결위한 면담	1948.6.22	
11-12 한국의 종교조사	한국종교 상황	미상	

위에서 주목할 만 것 중의 하나는 한국종교 관련 조사(간략한 조사결과)이다. 전시상황에서 종교, 여러 종교 단체들(기독교·불교·유교·이슬람, 유사종교)라는 용어는 일본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천도교, 수운교, 보편교, 대종교, 사머니즘, 일본종교재산 등을 다루고 있다. 특수분야로 선교사의 귀환, 교도소 군목, 한국의 종교교육, 사회봉사, 출판, 군목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신도는 국가 신도가 아닌 종교로서 신도(신사신도)만을 수용하며 종무 행정을 일제 하에 내무부에서 문교부 산하에 종교과로 통일하고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되 적산처리 문제, 군목문제, 일제의 유사종교라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에서 제안한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법령 제194호)은 미군정

19) General Headquarters, Southwest Pacific Area, *Special Report* 115, 1945.9.4, 70쪽.

20)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상), 흥지원, 1992, 1314-1373쪽.

이 수용하여 향교 등 유교의 재산권이 국가에서 유림으로 이전되게 되었지만 불교총무원에서는 1946년 7월22일, 8월 22일에 군정장관에게 사찰령, 포교규칙 등 법령 폐지를 입법의원에 제출하여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은 이를 미루다 결국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미 군정의 종교정책이 법령개폐, 적산처리 등에서 기독교 등 특정 종교에 편향된 경향이 짙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기독교에 공인교적 위치를 부여해주는 미 군정 종교정책이 제1공화국에 걸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 관련 법 개정, 종교 관련 귀속재산 처리와 함께 기독교를 통해 상당한 구호물자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다²¹⁾.

III. 교단 관련 대외 인사의 분류

불법연구회 당시 교단 관련 외부 인사는 교단 내의 각종 자료(『원불교 교사』, 『대종경 선외록』, 『교고총간』 (『월말통신』, 『월보』, 『회보』, 『사업보고서』, 『초기교서』 등)와 『원불교대사전』, 유관 저서 및 논문 및 대외 자료 등에 노출된 인사 또는 『조선총독부 직원록』을 비롯한 관방자료(『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익산 관련 자료 등), 대한민국공훈록, 각종 신문, 논문, 저서 등의 외부 자료에 노출된 관련 인사로서 교단 내외 교차 검증이 가능한 인사에 국한하였다. 여기에 주요 외부 인사들을 목록화하여 소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3> 교단초기 관련 외부인사 목록

분 류	인 명	교 단 내 관 련 근 거	참 고 자 료(외부 자료)
종교계 (6인)	金泰治(1899-1989) 스님 (金山泰治, 大隱)	『대종경 선외록』 교단수난장 17 『불교정진』 (1943)편집검발행인/대중사 열반후 발인식 거행(박용덕,1999 :238)	《법보신문》 (2005.8.7) 불전 교수 및 불교시보사 사장 『친일인명사전』,2009. 『친일불교론』,1993.,
	나카무라겐타로(中村建太郎 :1883-1969) 언론인	『대종경 선외록』 교단수난장17. (박용 덕,1999:153), 이한산(1971:880)	나카니시나오키(中西直樹), 『植民地朝鮮 と日本佛教』 三人社,2013. 《조선 총독부관보》
	우에노슌에이(上野舜穎 :1869-1947) 스님	『대종경 선외록』 교단수난장 17 『원불교교사』 104,107쪽. (박용덕,1999:45)	《조선총독부관보》 (3083) 1937.4.28.국민정신총동원위 평의원,조 선 '39.4.18 『조선침략참회기』, 2003.
	구로타에헤이(黒田恵海)스님	일련중 총감(박용덕,1999:138) 일련중 경성 호국사 주직	《조선총독부관보》 1033 (1916.1.17)-5052(1944.1.15)
	오하시소쿠쥬(大橋即淨: 1885-1955)스님	익산불교연맹회장. 『원불교교사』 104 쪽. 『사업보고서』 (1941:149) ,(1942:159), (박용덕,1999:143)	大橋即淨(양은용역), 『朝鮮駐在36年』, 익산시, 2020,
	오쿠보(大久保)스님	약초관음사 주지(박용덕,1999:169)	未詳(문예진,2017,서울과 역사 96)

21) 강돈구, 「미 군정의 종교정책」, 서울대학교 종교연구소, 『종교학연구』 12, 1993, 41쪽.

분류	인명	교단내 관련 근거	참고 자료(외부 자료)
경찰 15+6 (21인)	가와무라마사미 (河村正美) 이리경찰서장	『대중경 선외록』 교단수난장 17 이리서장1년반제임(박용덕,1999:54)	《조선총독부직원록》 《조선총독부관보》(4801) 1943.2.4
	하시구치료쵸 (橋口良三) 日警	가와무라(河村)의 후임?, 안자이가네지 (安西謙次:1941-)(박용덕,1999: 55)	《조선총독부직원록》,1942년 이리경찰서근무
	스기야마세이키치 (杉山精吉) 日警	이리경찰서 형사부장(박용덕,1999 :56,87)고등주임 사이토사부로(内藤三郎: 이리경찰서 1942년 근무)	《조선총독부 관보》, 제4679호
	바마구치나오지 (馬場口直二) 日警	1938년 이리경찰서 경부(박용덕, 1999:56)	이리경찰서 경부보(1936)
	미쓰하시코이치로 (三橋孝一郎)총독부경무국장	1938년 총부를 래방한 경찰관(박용 덕,1999:41),오이카와마사토(及川正人: 전북고등경찰과장),키타무라테루오(北村 輝雄:전북경찰부장),이리에미키오(入江幹 去:이리서장),하마구치가네토시(溝口兼 俊:고등주임),히무라테루오(比村輝雄:총 독부도서관)	미쓰하시코이치로(三橋孝一郎:총독부경 무국:1930-1941재직)/전북 경무과장, 이테이사무(井手勇)/전북 보안과장,이 즈미가와마사토(泉川正人)
	스즈키스미쵸 (鈴木住藏) 日警	이즈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의 후임? (박용덕,1999:54)	스즈키스미쵸(鈴木住藏)이리경찰서 재 직기간 1921,1934-1936.
	이즈미가와히데오 (泉川秀雄)이리경찰서장	북일주재소 창설 당시(1936) 이리서장(박용덕,1999:25,52) 이즈미(泉川)後任,스즈키스미쵸(鈴木住 藏)(박용덕,1999:54)	이즈미가와(泉川) 이리경찰서 재직연 도 1920-1921,1937,
	야스카다미하루 (保坂民治) 日警	일경(박용덕,1999:120,167)	《조선총독부직원록》(1940-1942 경 북경찰부)
	육무철(陸武哲),조선인 경찰	이리경찰서 보안주임 (박용덕,1999:58,146)	『천일인명사전』,2009 이리경찰서(1935-1938 근무)
	무가이사신 (向井佐眞) 日警	이즈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부하 고등주임 (박용덕,1999:57,147)	이리경찰서 경부보(1937)
	송종태(宋鐘泰) 조선인 경찰	순사 소태산 대종사에 무례 (박용덕,1999:57) 1933년 경찰투신	《조선총독부관보》 제915호 (1930.1.23) 『천일인명사전』,2009
	시모무라스스무 (下村進)총독부보안과장	1937년 총부 급습(박용덕,1999:31) 전북경찰부장(1932)안이가와쇼타(相川 勝大)	《조선총독부직원록》
	무가이사신(向井佐眞) 日警	은부자시녀법 트집(박용덕,1999:36)	이리경찰서 고등주임
	김진홍(金振弘) 조선인 경찰	황순사 후임 (박용덕,1999:58)	未詳
호사카(保坂民治) 일본 순사	총부예회 감시(박용덕,1999:120)	未詳	
군 (5인)	마끼지로(牧次郎) 소장	호남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 牧 소장(김정 용,1989:224),(박용덕,1999: 153-154) 호남병사부사령관	《동아일보》,1939.10.9. 森田芳夫,『朝鮮終戰の記録』 東京: 巖南堂, 1963, 24쪽
	아마와키마사오(山脇正雄) 중장 /스가노기요시(菅野淨) 중좌	護鮮軍 160사단장 (이리농림 주둔)보병 464연대장(이리공고 주둔) (박용덕,1999:155)	森下智,『帝國陸軍の軍旗』,권2,帝國陸 海軍史研究會,2018,
	니시즈미고지로(西住小次郎 :1914-1938)대위	《회보》 54호(4.5월호/1929)-65호 (1930) 昭和軍神의 니시즈미(西住)대위	《조선일보》, 《동아일보》, 1939.3.12
	구스랍 소좌	전채동포구호사업	《중앙신문》 제46호, '45.12.16. 2면 4 단
	James Wilson 중좌	"	《남조선민보》 '48,10,14 조선일보, '45.12.16

분류	인명	교단내 관련 근거	참고 자료(외부 자료)
언론인 (5인)	우에다다츠오(上田龍男: 李泳根: 1910- ?) 기자	『교고총간』 4권 266쪽.	《경성일보》 '41.10.21-24
	《매일신보》 이창태	안창호 총부 방문 동행(박용덕,1999:23)	《조선일보》 '37,10,31
	《조선일보》 조기하	"	《조선일보》 '30,12,20
	《중외일보》 김철중 (1883-1962)	" 《동아일보》 발행겸 편집, 《동아일보》 서무부장(1930)	《조선일보》 '70.3.5. 김철중 정역언 도, 《동아일보》 '62.6.1.'64.4.1 《동아 일보》 '66.1.29
	《동아일보》 배현 (1896-1955)	" 《동아일보》 이리지국장	국가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의료인 (5인)	김병수(삼산병원장) (1898-1951)	소태산 주치의, 《회보》(삼산)(박용 덕,1999: 190-191, 203) 敵産 東本原 寺 중앙교회로 전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문치순 (1900-?)이리병원장 구마모토(熊本)醫大 졸업	소태산 치병의 이리병원장 (박용덕,1999:207)	'23-36전주자혜의원,마약류중독자 치료소, 나가사키(長崎)醫大 산부인과 학 박사학위 취득(1938.3)
	와카스키헤이(若杉鼎)의사	소태산 치병의 이리병원 내과의사(박용 덕,1999:203,207,220)	《조선일보》 '38.8.7 나가사키(長崎)醫大졸업(1938.7.7),
	이돈수 의사	소태산대중사 방문의사(박용덕:203)	《중외일보》 '28.7.20 이리축탁의
	고영순(오사카 의대,1921)	소태산 방문의사, 경성 내과 전문의(박 용덕,1999:203)	의약연구회조직 《동아일보》,1935.7.21.
공무원 판검사 (5인)	이범승(李範昇:1887-1976)부 부윤	경성부 부부윤	전재동포구호사업, 《동아일보》,1946.12.10
	요시나가쇼이치(増永正一 :1882- ?)검사장	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 (1939.10)송벽초 천황모독사건	고등법원 고등검사국 근무 (1921-1942)
	이나다야키오(稻田壽生) 총독부 사무관	총독부 사무관 박광전 일제중성 시험(박 용덕,1999:148)	《판보》 3170('37.8.9)충남도경경찰부 장대리(조선,'25.4.2)
	다케다노부히사(武田信壽) 판사	송적벽 천황모독사건 판결 (양은용:1999)	전주지방법원(1939-40) 《조선일보》,1939.3.19
	아오야마료쥬(青山良三) 검사	" 구형 (양은용: 1999)	전주지방법원검사국(1939-40)
정치인 (2인)	안창호(1878-1938)	『대중경 선외록』, 교단수난장 5	『대중경』 실시품 45
	김 구(1876-1949)	정산종사 유희일 대동 경교장 방문	《신조선보》, 《자유신문》, 《조선일 보》 1945.12.5
학계 (1인)	무라이마지순(村山智順 :1891-1968)	불법연구회를 불교계 유사종교로 분류하여 기술	『조선의 유사종교』 1935,조선총독부 曠語/경성제대 사회학과

위의 인물을 제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연구회 관련 당시 외부 인사는 약 50여 명이 표본 추출되었다. 이들을 직능별로 분류하면 종교계(불교), 경찰, 군인, 언론인, 의료인, 공무원 및 사법계, 정치인, 학계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 별로는 일본(33인), 조선(15인), 미국(2인)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군인은 5명(일본군 3인, 미군 2인)이며 친일인사로 분류된 인물도 4명(김태휴, 이영근, 육무철, 송종태 등)이 확인된다.

둘째, 이들이 교단과 관련된 시기는 1930년대, 1940년대 그리고 광복 후, 미 군정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935년대는 일제가 불법연구회를 불교계의 유사종교로 분류하는 한편, 안창호의 익산총부 방문(1936), 총부 구내에 주재소의 설치(1937), 미스하시(三橋) 등 일본경찰의 총부 급습(1938) 천황모독사건(1939), 《회보》 정간(1940), 불교연맹 가입 강요(1942), 국

방헌금 강요(1938-1944), 황도불교화(1944) 등 일제의 갖은 압박이 가중되는 시기라면 1940년대는 전시체제 하에 총동원령의 반포, 심전개발운동, 『불교정진』의 발행, 불교연합회 가입, 소태산의 열반, 황도불교화 등과 관련된 외부 인사들의 동향이 발견되며, 광복 후는 전재동포구호사업 및 정산종사가 김구 주석을 만나 임정지지 선언 및 반탁 동의 활동이 주목을 끈다.

셋째, 교단과 관련하여 노출된 태도를 기준으로 이들 인물의 성향을 보면 교단에 우호적인 인물과 일제의 입장에서 교단을 바라보거나 압박을 가한 인물(비우호적인 성향), 중립적인 인물 등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우호적인 인물로는 김태흡, 우에노(上野舜穎) 스님을 비롯하여 가와무라(河村正美)익산경찰서장, 배헌 등 언론인, 안창호, 김구, 나카무라젠타로(中村健太郎) 등이라면 비우호적인 인물들은 주로 일제 하의 일본군과 경찰 및 사법부, 총독부 관련 인물들이며 중립적인 인물들로는 1943년 일제 말기 소태산 대종사를 진료한 의료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김병수는 대종사를 진료한 의사 중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제일교회 장로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지도적인 인물이며 교단 기관지인 《회보》에 위생에 대해 여러 차례 기고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 부윤(府尹) 당시(1946) 적산 정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이리 소재의 서본원사를 제일교회에 불하)는 교단에 우호적이라거나 적어도 중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IV. 배경요인 분석

1. 초기 교단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

초기 교단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로는 조선 및 일본 국적의 승려, 언론인, 미군, 서울시 공무원, 정치인 등을 들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인격과 지도력에 또는 교리나 제도에 감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소태산 재세 시 관련된 인물도 있고 열반 후에는 초종 장례와 광복 후 전재동포 구호사업 그리고 정산종사가 직접 경교장의 김구를 방문하여 임정지지 선언을 한 사례 등에서도 발견된다. 재세 시 인연을 맺은 인물로는 김태흡, 우에노(上野) 스님 등이다. 그 밖에 일제 말기 재가불교도인 나카무라젠타로(中村健太郎) 등도 교단에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되며 광복 후 전재동포구호사업을 위해 군정 및 서울시에 교단의 등록을 담당할 김법승, 미군 등과 정치인으로는 안창호, 김구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일본 경찰이었지만 우호적인 인물로는 이리경찰서장 가와무라(河村正美)를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교단에서 명예대호법으로 추존한(제125회 임시수위단회:1988.10.26) 인물(上野 스님, 김태흡스님, 河村서장)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이 밖에도 교단과 관련된 외부 인물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이리불교연맹 책임자인 오하시 소쿠조(大橋即淨:1885-1955)관련 기사가 발견된다²²⁾. 당시 원기 원기27년(1942)²³⁾에 그는 불교연맹 대표자이면서 이리에 소재한 일련종 영국사 주직이었다²⁴⁾. 물론 유사한 불교단체인 불교진흥회 익산지부 설립이 1922년 8월 7일에 이뤄진 바도 있

22) 《사업보고서》 시창 28년, 12.16, 159쪽. 이리불교연맹 주최로 이리국민교에서 육군상병 大杉 씨 읍민장/ 《사업보고서》 시창26년,12.19 149쪽, 육군상병 木下瞳 상병 읍민장 거행 등.

23) 《원기 27년 사업보고서》, 『원불교교고총간』 5권, 154쪽, 조동종 고덕사에서 본 불교연맹 봉사 하에 고 육군 상등병 목하동씨 읍면장 거행(1942년).

었다²⁵). 그러나 이들 일본인 승려가 교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원불교교사』에는 대종사 열반을 당하여 일본 승려의 활동(“1943년 6월 6일 오전10시 불교 연맹 이리 칠중 승려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영결식을 거행, 초종 장례는 김태흡이 주례했고 종재에는 일본 명승 上野舜穎이 참석하여 설법 중 흐느낌을 금치 못하였다”²⁶)이 확인된다. 당시 익산지역의 불교 7종²⁷)은 대체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이 후 1930년대 조선의 일본 불교는 19개과 사원 101+포교소 348, 포교사 452, 신도수 26만3500명(조선인 7,500명 포함) 등으로 파악된다²⁸). 그러나 불법연구회와 관련된 당시 인물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승려로는 조선인 김태흡(1889-1989) 스님과 일본 조동종 우에노슌에이(上野舜穎: 1872-1947)스님이다. 그 밖에 재가불자인 나카무라겐타로(中村健太郎:1883-1969)를 들 수 있다. 먼저, 우에노슌에이(上野舜穎)스님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 교단이 일제 하에서 존폐의 어려운 고비를 맞았을 때 우리 교단을 측면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 불교시보사의 사장이었던 김태흡스님, 일본 조동종의 우에노(上野스님:박문사 주지), 임제종의 나카무라겐타로(中村健太郎)씨, 이리경찰서 가와무라(河村)서장 등이다”²⁹) 라고 적고 있다.

먼저, 『조선총독부관보』에 의하면 박문사 주직이었던 우에노 스님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그는 1935년 조선에 온 후 1937년 일제 말기에 자혜원, 조선불교협회 관련 활동을 한 흔적이 있다³⁰).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 관장하는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에 개인 자격의 위원으로 참여한 흔적도 보인다³¹). 2015년 6월 15일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일본침략참회기』(『曹洞宗は朝鮮で何をしたのか』, 皓星社,2012) 저자인 일본 조동종 운상사(雲祥寺) 주직 승려인 이치노헤쇼코(一戸彰晃:1949-2023)를 초청하여 ‘우에노슌에이(上野舜穎)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연구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여기서 그의 행적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³²). 한편 이치노헤 스님의 저서

24) 駐鮮三十六ヶ箇年(大橋郎淨 著, 양은용 역, 『조선주재36년』, 익산시, 2020, 56-57쪽.

25) 《동아일보》, 1922.8.18.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1922.8.7. 불교진흥회 설립

26) 『원불교교사』, 104쪽.

27) 木原壽, 『益山郡事情』, 京城: 조선인쇄주식회사, 1928, 31쪽; 山下英爾, 『호남보고이리안내』, 문화상회, 1927; 大橋郎淨(양은용 역), 『조선주재36년』, 익산시, 2020, 57쪽 등 참고. 칠종은 淨土眞宗 大谷派(동본원사:1912), 日蓮宗(榮園寺, 1912, 236명), 조동종(이리포교소, 1924, 40명), 정토진종 本願寺派(大聖寺, 1917, 1200명), 眞言宗智山派(眞光寺, 1916), 진언종 고야파, 이리임제종 등

28) 《동아일보》, 1930.1.26. 최근 종교계 消長: 1916, 247명.

29) 이공전, 『대종경선외록』, 교단 수난장 17장, 원불교출판사, 1985, 145쪽.

30) <1> 《조선총독부 관보》 제3083호(1937.4.28) 재단법인 경성불교 慈濟院 龜山弘應 법인등기

<2> 《조선총독부 관보》 제4408호(1941.10.2) 재단법인 경성불교 慈濟院 龜山弘應 법인등기

<3> 《조선총독부 관보》 제4632호(1942.7.8.) 재단법인 조선불교협회 법인등기

31) 《조선일보》, 1939.4.18

32) “우에노는 1935년 10월부터 1944년까지 10여 년간 하쿠분지(博文寺)의 주지를 역임하여 조선 종교계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로 소개한다. 우에노는 1912년(40세)에 조동종 종회의원에 당선되어 宗門정치에 관여했고 조동종 상서를 거쳐 총무에 취임했다. 상서는 각 부장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면 총무는 조계종 총무원장 격에 해당되어 그의 이런 이력은 불교수행의 지도자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면에 재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1935년(63세) 총무를 퇴임한 후 경성 박문사 제2대 주지(초대 주지 鈴木天山:1863-1941/上野주지

인 『조선침략참회기』(2012)에도 上野스님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다³³⁾. 사후 그의 묘지는 후쿠이현(福井縣) 삼방군삼방정 와룡원세대묘지(三方郡三方町臥龍院世代墓地)에 안장되어 있다³⁴⁾. 그의 저서로는 『대본산영평사감원』(『大本山永平寺監院』, 1930)³⁵⁾이 발견된다. 이상과 같이 우에노 스님의 행적은 젊은 시절에는 엘리트 승려로 종단의 중책을 수행하다 1935년(62세) 조선에 건너 와서 약 10여년 동안 박문사 제2대 주지이자 총독부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교단과 접촉한 시기는 일제 말기 교단이 고비에 처한 시기로 사찰차 방문(1937년³⁶⁾)한 경우와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 이후 장례에 참석차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1943년).

한편 김태흡(大隱)스님은 소태산의 열반 후 자진해서 초종장례를 주례하기도 하고 『불교정전』(1943)의 편집 및 발행인을 맡기도 했다. 1942년 4월경 일경(全北道警)이 황도(皇道)선양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정전』 발간을 불허한 후 9월 초 김태흡 스님이 총부를 내방(1942.9.2-9.7:호남지역 순회 강연차 익산에 옴)하고 소태산의 인격에 감명을 받아 불교정전 발행을 자임하고 1943년 3월 20일에 발행인 겸 편집인 금산태흡(金山泰洽), 불교시보사 명의로 경성 수영사(秀英社)인쇄소에서 『불교정전』이 발행된다³⁷⁾.

김태흡 스님은 김대은, 석대은, 가네야마 타이코(金大隱, 釋大隱 金山泰洽) 등의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일본대 종교과(1926)를 수학한 후 귀국하여 봉은사 포교당 포교사(1928), 봉은사 저동 포교당 포교사(1933)(『조선총독부관보』 1857:1933.3.20./2092:1933.11.29)를 역임했고 불교시보사(1935-1944)

1935-1944 주지)로 부임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조동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동을 전개한다. 1944년 72세에 병환을 얻어 귀국 후 3년 뒤인 1947년 입적했다. 당시 하쿠분지(박문사)는 일본불교를 포교하는 장이라기 보다는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顯彰하고 일본인에게 스스로 우월성을 자각시키며 국책수행을 추진하기 위한 장치였다. 우에노가 꿈꾸는 포교는 불교를 총독부 시책에 종속시키는 것이었으며 조선총독부는 ‘심전개발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선인을 내면으로부터 개조하려 했다. 실제로 우가키 카즈시게(宇榎一成:1868-1956) 총독은 1936년 1월 15일 경성 부민관에 심전개발위원회를 소집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심전개발에 관한 강연집』(1936)을 출판했는데 19명의 강연 중 맨 마지막에 우에노의 강연제목(‘심지의 개척’) 있었다. 이처럼 그는 총독부 시정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우에노(上野)는 조선에서 종교를 통한 宣撫施策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원불교신문》, 제1757호, 2015.6.19.).

33) “우에노는 일본 武生(현 福井縣 에치젠시: 越前市)에서 태어나 조동종 종문분 분교, 동지사 조동종대학원, 東京和佛法律學校 등에서 수학한 후 38세에 準師家가 되었고 자신의 사찰인 가류인(臥龍院)에 승당을 개설하여 승려를 지도했다. 1912년(39세) 종의회 의원에 당선, 대본산 에이헤이사(永平寺) 동경출장소 감원, 조동종 총무를 거쳐 스즈키 덴잔(鈴木天山)에 이어 경성 박문사 제2대 주지가 되었다. 경력으로 알 수 있듯이 그는 학구파 엘리트였다. 소화7년(1932) 駒澤대학 『실천종승연구회 연보』에 ‘포교의 豫件’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포교를 하는 자는 단순히 사상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의 넓은 식견을 엿볼 수 있다. 심전개발운동에서 그는 “총독부 식민정책에 따르는 것이 옳고 그에 반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의문이나 불만을 품는 일 없이 무조건 따르기 위해서 마음발 일구기를 권하는 것이다”(이치노헤쇼코(一戸彰晃)著, 장옥희 譯, 『조선침략참회기』, 동국대출판부, 2013. 161-163쪽).

34) 堪山泰學, 「教化に關する考察」(2), 『曹洞宗研究院生研究紀要』, 제11호, 1979.8.30.

35) <https://ndlsearch.ndl.go.jp>.

36) 총독부 고문이며 박문사 주지 우에노의 불법연구회 총부 방문은 공식적으로 총독부 경무국 촉탁에 의한 교리사찰이란 명목을 띠었다. 그는 시자와 같이 송대에서 1주일 거하며 불연 간행 교과서 일체를 검열했다, 통역은 이리경찰서 육무철이 담당했다(박용덕,1999:146쪽). 육무철이 이리경찰서 재직기간은 1935-1938년 이며, 이 무렵 向井佐眞의 이리경찰서 재직(1937)기간으로 보아 우에노 스님의 총부 방문 시기는 1937년 경으로 유추됨.

37) 고시용, 『원불교 교리 성립사』, 한국학술정보, 2012, 129-130쪽.

를 운영하기도 했다. 불교시보사를 통해 주로 자신의 불교 관련 저서 17종을 발행했다³⁸⁾. 그의 불교시보사에서 맨 마지막으로 발행한 것이 불법연구회의 『불교정전』(1943.3.20)과 『근행법』(1943.12.9)이다. 그리고 대중사 열반 후 “불법연구회 창시자 고 박중빈선생의 추모”라는 제하의 기사를 《불교시보》(1943.6.15-7.15)에 게재하기도 했다. 교단과 관련해서는 그가 경성 일련중 호국사 주직 구로다에카이(黒田惠海)와 함께 1942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호남지역 시국 강연차 익산에 도착³⁹⁾, 총부를 예방하여 대중사를 뵈고(장도영, 2017:198-199) 『불교정전』 발행의 기원이 맺어지게 된다. 이렇듯 김태흡스님의 교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심전개발운동, 내선일체, 황민화 운동 등에 참여한 행적과 관련하여 국가 사회적으로는 그를 친일 승려로 분류하고 있다⁴⁰⁾. 그리고 재가불자인 나카무라겐타로(中村健太郎:1883-1969)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직원록』 및 관련 저서에 행적 일단이 발견된다⁴¹⁾.

『대중경 선외록』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종교문제 촉탁임무를 띤 일본 불교신문사 사장 나카무라겐타로(中村健太郎)에게 불법연구회의 실정을 조사하도록 일임하였다”⁴²⁾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의하면 나카무라겐타로(中村健太郎)는 언론인으로 신문편집국장(1921 《매일신보》)을 역임한 친불교 성향의 재가불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의 이력에서도 잘 드러난다⁴³⁾. 이상과 같이 그는 조선총독

38) 김광식, 「일제하의 불교출판」, 『대각사상』 9, 2005, 28쪽에서 총 17종(1934년-1939년 까지 16종, 1943년 불교정전을 발행함).

39) 임혜봉, 『친일불교론』 하 민족사, 1993, 529-530쪽. 김태흡은 금산태흡이라는 창씨명으로 조선에 있는 일본사찰 호국사의 일본 승려 黒田惠海와 함께 9월 2일 부터 7일 까지 이리, 전주, 남원, 여수, 순천, 광주 등지에서 <불교에서 보는 대동아 전쟁 우리의 哲願>이라는 제목으로 시국강연을 함.

40) 임혜봉, 「불교계의 친일 인맥」, 『역사비평』 24, 1993, 110-111쪽. “제1급친일포교사 김태흡”(임혜봉, 『친일불교론』 상, 민족사, 1993, 300-305쪽).

41) 『조선총독부 직원록』 “그의 본적은 熊本縣 飽託郡 池上村 저서에는 『조선생활 50년』(1967년 7월 발행)이 있으며 가족관계로는 부인 中村薰(1888년생)과 장자 中村壽(1916년생)이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언론인, 편집국장, 경부철도(1903-1904), 일로전쟁시 한성신보가 諺文部 주간, 警部 고문부 번역관보(1906) 번역관(1907) 1910 퇴관, 한성신보 언문부 주임, 경성일보(1910), 매일신보 감사, 편집국장(1921), 총독부 경무국장 추천으로 同民會 상임이사(1923), 조선불교단의 기관잡지 《조선불교》의 주간(1924-1945)/심원섭, 「중촌건태랑의 아베 無佛翁을 추모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33-1, 2010/中西直樹, 『植民地朝鮮と日本佛教』, 京都:三人社, 2013, 181-219쪽/강문선, 「1920-1940년대 일본인의 조선불교 부흥운동과 그 양상: 中村健太郎의 『조선생활50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85, 2016/배병옥, 「일제시기 중촌건태랑의 언론활동과 내선융화운동」,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단의 연원과 사적변천」, 『대동문화연구』 97, 2017.

42) 이광전, 『대중경선외록』, 교단수난장 17. 원불교출판사, 1985, 145쪽.

43) “일찍이 그(나카무라겐타로:中村健太郎)는 熊本심상소학교를 거쳐 1899년 7월에 웅본현 파견 조선유학생 제2기생(10명)의 한 사람으로 조선에 건너왔다. 서울 남산의 일본인 거류지의 樂天窟을 숙소로 생활하면서 조선어, 영어, 한문 등을 3년간 수학한다. 그 후 평양의 일본어 학교인 洛淵義塾에서 교원을 거쳐 경부청도회사에 측량반 서기로 1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러일전쟁(1904) 후 한성신보의 주간, 경무고문 사무의 보좌, 잠시 질병 치유 후 매일신보에도 관여하는 한편 경성일보 사 사장인 阿部充家の 통역을 담당하면서 임제종묘심사파 경성 별원의 後藤瑞巖과 함께 선 수련과 불교연구를 수행했다. 1920년 齊藤實 총독의 권유로 조선총독부 사무관으로 1923년 8월까지 근무했다. 그런 사이에 그는 同民會, 조선불교단 설립에도 중심 역할을 했다. 조선어에 능하고 조선지방 사정도 잘 알면서 13본사 주지와 친교가 있는 그는 조선총독부의 의향에 따라 조선불교의 어용화를 측면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추진역으로서 적임자였다. 동민회는 1924년 4월 內鮮融和와 동아

부의 관료, 언론인, 불교관련 단체 등에 관여했다. 1930년 조선불교 저서⁴⁴⁾를 발행하는 등 그의 행적으로 보아 불교 관련 언론인 임이 분명하다. 다만, 그가 임제종과 관련은 경성일보사 사장인 아베(阿部充家)의 통역을 담당하면서 임제종 묘심사와 경성 별원의 고토스이젠(後藤瑞嚴)과 함께 선수련을 하는 좌선회에 참석(1915.1.11)한 것과 매월 1일-5일에 섭심회(攝心會)에서 열리는 가마쿠라(鎌倉) 원각사 관장 사쿠소엔(釋宗演:1859-1919) 선조사로부터 미사키(三笑)라는 거사호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그의 행적으로 보아 불교에 관심이 많은 언론인이자 재가불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불교도대회(1929)의 기관지인 《조선불교》 사장인 그에게 불법연구회의 실정을 조사토록 위임했다는 사실은 확인을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법연구회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황도불교화를 피한 의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임제종과 관련은 1915년 선수련에 참여한 근거는 있지만 그가 불교 관련 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특정 종교에 인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편 나카무라(中村)의 교단 관련 인연을 이렇게 보기도 한다.

“1944년 호남전투 사령관 마끼(牧) 소장은 총독부에 불법연구회 처리건을 내신했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종교문제 촉탁으로 있는 일본 불교신문사 사장 나카무라(中村)에게 불법연구회 실정을 조사하도록 일임했다, 이에 그는 황도불교화 계획을 진행시켰다”(박용덕, 1999: 153).

위에서 마끼지로(牧次郎) 소장이 조선총독부에 불법연구회 처리건을 내신한 배경, 그리고 왜 나카무라(中村)에게 불법연구회 실정 조사를 위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우에노 스님과 김태흡 스님, 나카무라겐타로 등은 조선 불교계, 조선총독부 등에 영향력있는 인사로서 교단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것은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광복 후 이들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 좀 더 치밀하고도 엄정하게 정리되었는지는 아직 확인

민족의 결속을 목적으로 조선의 실업가, 종교인, 교육가 등 유력자를 망라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조선불교단과 관계도 깊어 두 단체는 총독부의 지원을 받았다. 조선불교도 대회의 기관지인 《朝鮮佛敎》의 편집 발행업무도 맡았다. 조선불교대회(1929)는 조선불교의 진흥을 목적했지만 조선의 독자적인 불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불교의 지도 받기를 기대했다. 이에 조선인이 주축이 된 조선불교보급회(1929)가 결성되기도 했다. 1925년 조선불교대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조선불교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한편 1930년대 후반 총독부는 여러 종교의 일치단결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심전계발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1935년 그들이 심전계발운동의 구상은 의례준칙의 시행, 농어촌 진흥, 도민신앙 등에 관한 것이었다. 宇桓一成 총재는 종교교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심전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정신생활의 쇄신에 종교가 기여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각 단체의 의견을 모아 단체 관념을 분명히 하여 경신송조사상 및 신앙심 함양, 보은감사 자립정신 양성 등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대가 있자 중일전쟁 하에서 황민화 시책으로 전환되면서 1940년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결성한다. 南次郎 총독은 중일전쟁에 지원병 강제 모집, 일어의 강요 조선어 사용금지, 창씨개명을 추진하는 한천 조선종교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견지했다. 조선불교, 유사종교에 대해 공방적인 자세를 강하게 보였다. 조선불교의 적폐 일소의 요구는 일반 조선불교의 사회활동에 적극성을 요구하지만 실은 전시체제에 적극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1935년 조선의 유사종교 간행도 기성종교가 민심의 구원에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기성종교를 규합하는 종교적 사명을 부흥시키고자 하면서도 유사종교의 민족주의 지도적 역할을 경계했다”(中西直樹, 『植民地朝鮮と日本佛敎』, 東京: 三人社, 2013, 181-209쪽).

44) 《동아일보》, 1930, 2.9/ 《조선일보》, 1931, 2. 6, 『조선불교』 (조선어), 『조선불교대회기요』 (일어) 등이 발견됨.

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군(구스랍 소좌, James Wilson 중좌)과 서울시 부부윤(副府尹) 이범승(1887-1976)은 전재동포 구호사업과 관련하여 교단이 참여 등록하는데 도움을 준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⁵⁾.

마지막으로 정치인, 언론인 등도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안창호의 이리역 하차 시기는 1935년 여름(박용덕, 1999:22-23) 혹은 1936년 2월경(김도형, 2019:322)으로 각각 추정된다. 도산의 이리역 하차는 정확하지 않지만 "도산이 전북 시찰 도중 2월 21일 오후 내전 시내를 일순하고 금구로 향했다"(《매일신보》, 1936.2.26)고 하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1936년 2월 21일 전주 도착 전 익산에 기차로 도착 오전 중 불법연구회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신뢰할만한 기록은 하와이 국민회의 기관지인 《국민보》에 '도산선생의 탄사, 본지 특파원 성동호 씨 원불교 본지 현지 답사 지상의 낙원은 건설되는가'(《국민보》, 1956.6.20)라는 기사이다. 안창호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에서 일어난 홍구공원 의거로 일제에 체포되어 국내로 이송, 일제에 의해 4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투옥. 1년 후 1933년 대전 감옥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소화불량이라는 위장병이 심해 형기를 22개월 남기고 1935년 2월 10일 오후 1시 25분 기출옥되었다. 감옥생활만 약 30개월(1932.4-1935.10) 대전감옥에서 기출옥 당시 58세였다.

그의 지역 유력을 보면 1935년 2월 10일 오후 7시 25분 서울 도착. 2월 11일 오전 8시 서울을 출발하여, 오후 2시 44분 평양역에 도착하여 성묘, 용강온천 정양. 출옥 후 2년간 고국의 각 지역을 유력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고향 성묘, 여행을 좋아하여 전라도, 경상도 시찰 후 평안남북도 둘러 본다. 이 가운데 안창호가 익산을 방문한 것은 정확한 일시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1936년 2월 21일 오후로 추정하기도 하며 1935년 여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안창호가 익산총부 방문 시 함께 한 언론인 가운데 주목할만한 인물로는 배헌을 든다. 이리 《동아일보》 지국장였던 배헌의 안내로 도산이 불법연구회 방문을 하는가 하면 불법연구회 관련 기사를 《동아일보》에 소개한 인물이다. 반면에 언론인으로 불법연구회를 기사화한 이영근(일본명 우에다다츠오(上田龍男: 1910-?))⁴⁶⁾은 친일 언론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안창호의 총부 방문에 동행한 배헌(裴憲)은 누구인가? 《동아일보》 이리 지국장 배헌(1896-1955)은 이리에서 출생하여 신흥무관학교 입학(1913) 졸업, 졸업 후 길림성 북로군정서와 연락 임무를 했고 군자금 모집책으로 활약하다 1924년 고향인 이리에 정착, 처음 맡은 일은 《동아일보》 이리지국 기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한다⁴⁷⁾.

45) 《중앙신문》, 제46호, 1945.12.16. 2면 4단. 8.15 이후로 애국심에 불타는 각 단체가 촉생하여 우리 민족해방과 독립완성에 이바지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한편 이 천재일우의 자유해방 시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하려는 악덕 모리배들이 적지 않아서 심지어 불쌍한 전재동포를 구제하는 신성한 사업까지도 이러한 악덕한들에게 이용되어 각 방면으로부터 분격을 사고있는데 군정청 경리장교 구스랍소좌의 15일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군정관 윌손소좌와 이범승 시장은 일정한 허가없이 구제금을 모집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검거하여 처벌한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10월 12일에 서울시 사회과에서는 전쟁동포 구제금을 모집하는 단체는 동월 15일까지 서울구호단체연합중앙위원회에가입하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 13단체가 허가되었다. 《남조선민보》, '48.10.14, 《조선일보》, '45.12.16.

46) 李泳根은 아와모토다츠오(河本龍雄)로도 개명한 친일언론인으로 충남 온양출신 연희전문(1938), 미 에모리대 수학, 녹기연맹(1936), 내선일체, 황민의회식양성 목적의 청년운동 및 일제 침략전쟁 협력. 《경성일보》('41.10.21)에 불법연구회 연혁, 교리 등 소개(『원불교 교고총간』 4권:266)

47) 이명진, 「전북 이리의 식민지배 체제와 저항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2022, 159-165쪽.

한편 안창호와 동행했다는 언론인으로 《매일신보》 지국장 이창태, 《조선일보》 조기하 기자, 《중외일보》 김철중 편집국장, 이리경찰서 고등계 형사 미행(황이천의 구술)은 대조가 분명하지 않은 편이다. 다만 안창호가 불법연구회 총부 방문 시 미행한 이리경찰서 소속의 고등계 형사는 구로다이구마(黒田伊熊:이리경찰서 재직, 1934-1936), 마바구치나오지(馬場口直二:이리경찰서 재직, 1936) 두 명 중 하나로 유추될 뿐이다. 이상의 근거로 보면 안창호의 총부방문은 1936년으로 잠정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매일신보》 지국장 이창태에 대한 신문기사(《조선일보》(1937.10.31 일요강좌 신앙과 청년주제)와 《조선일보》 기자 조기하 (《조선일보》, 1930.12.20: 김제경찰서에서 지국장 趙琪夏씨 소환조사), 《중외일보》 편집국장 김철중⁴⁸⁾, (《조선일보》, 1970.3.5. 김철중 징역연도, 1964.4.1, 《동아일보》 66.1.29 경향)등 만이 당시 신문에 단편 기사가 확인될 뿐이다. 왜 이들이 불법연구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안창호와 동행한 점이나 행적으로 보아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언론인으로 유추된다. 한편 정산종사가 유희일을 대동하고 김구(金九) 주석을 방문하여 환영과 임정지지(1945.12.3.오후 4시) 및 반탁결의(1946.1.1)를 한 것⁴⁹⁾과 김구 서거 후 찬양한 법문 등으로 보아 상호 어떤 관계였는지를 미뤄 짐작하게 한다.

2. 초기 교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

초기 교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로는 경찰, 사법부, 일본군, 총독부 관련 인사(축탁 村山智順)등을 들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선 신종교에 대한 법규, 정책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입장에 선 인물들로 교단에 대한 이런 저런 압박을 가하거나 불법연구회를 유사종교로 분류한 인물이다. 먼저 불법연구회 관련 이리경찰서에 근무했던 인물들을 살펴 보자. 일제강점기 초기 익산지역의 치안은 헌병대가 담당하다, 1919년(大正 8년 8월) 경찰제도의 개정에 의해 헌병분대는 철수되고 이리경찰서가 설치되었다. 관할 구역은 익산군 일원으로 주재소 15개, 파출소 1개였다. 창인동에 헌병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다. 그 후 이리경찰서 건물이 신축낙성(1929.4.14.)되어 이전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 불법연구회 창립 무렵 이리경찰서장은 이시사키우메지로(石崎梅次郎:경부 4: 종7 훈8, 1924-1926년까지 근무)였다. 이어서 스즈키스미타케(鈴木住藏:경부 6: 1934년-1936년까지 근무), 이스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경부 4:1937년 근무)가 근무했고 교단에서 명예대호법을 수여한 바 있는 가와무라마사미(河村正美:警部 5)서장은 1939년-1940년까지 근무했다. 광복 직전의 이리경찰서장은 마쓰이미치오(松井三千雄:1945 경시 조선총독부관보 제5526호, 소화 20.7.2/朴乙 守:1900-?)였다.

배헌은 민립대학 기성회 익산지부 집행위원, 이리 기근구제회 집행위원, 이리 인쇄공친목회 고문, 이리기철 임원, 이리청년회 집행위원, 이리 자유노동자동맹 위원장, 전북기자대회 준비위원, 이리 노동동맹 위원장, 이리소년회 임원, 전북청년 연맹위원, 광희여숙 간사, 이리정미인접인부조합 조합장, 전북공업학교 설립 준비회, 발기위원, 익산노동연맹위원, 동아일보 전북지분국 위원, 익산청년연맹임원, 조선민흥회 준비위원, 동아일보 이리지국장, 이리읍회 의원(1931, 1935 재선), 이리산업조합 평의원, 排炭동지회 이리지부 부회장(1939), 전라북도 상공회 부회장, 이리부청 고문, 재현 국회의원, 이리중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48) 김주용, 「1930년대 중후반 조선총독부의 불법연구회 인식과 통제」, 『동국사학』 81, 2024, 294쪽.

49)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조선보》, 1945.12.5/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장.

소기영(蘇祈永)의 『익산군지』(1932)에 의하면 당시 이리경찰서(44명)에는 파출소2, 주재소 17개(46명)가 운영되었으며 북일면 주재소는 폐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⁵⁰⁾. 1928년 11월 이리경찰서 편제는 경무, 보안, 위생, 고등, 사법계가 있었고 경찰관은 총 86명이 근무했다(조선인 37명, 일본인 49명). 교단 내에 노출된 이리경찰서 재직 경찰관 기록을 보면 이렇다. ”이리경찰서 이쓰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 불법연구회 속한 북일면에 주재소를 설치한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려 허가받다⁵¹⁾고 하였고, ”불법연구회 내에 임시주재소를 북일면 주재소로 옮겨 감사와 조사활동, 황가봉과 고지마 교이찌(小島京市)두 순사가 총부 구내에 북일주재소 설치 파견(1936.10-1941.4)되었다⁵²⁾“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위 기록에서 이쓰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의 관련 사항이 조선총독부 직원록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비록 직원록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북일주재소 설치시기 등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요컨대 불법연구회와 이리경찰서와 관련 기록은 조선총독부 기록 및 유관 기록 간에 교차점검을 통해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예 <표 4 > 참고).

<표4> 불법연구회 관련 이리경찰서 사항

순번	교단 내 이리경찰 관련 내용	외부 유관 기록 (『조선총독부 직원록』, 『관보』, 『익산군지』 등 유관기록)
1	1935년(시창 20) 9월경 이리경찰서장 이쓰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는 조선인 순사 황가봉을 불러 지시했다. (장도영,2017:48).	이쓰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이리경찰서장,재직기간: 1920-1921, 1937년) 스즈키스미조(鈴木住藏:1935-1936:경부 5), 이시가와히데키(石川秀雄:1937: 경부 4)
2	1935년 익산군 관내 이리역, 춘포면 2개의 주재소가 있을 뿐이었다(박용덕,1999:26).	이리경찰서(44명)에는 파출소2, 주재소 17개(46명)가 운영되었으며 북일면 주재소는 폐지되었다.(蘇祈永, 『益山郡誌』, 익산읍지증간사무소,1932)
3	북일주재소 창설 당시(1936) 이리경찰서장 이쓰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였다 (박용덕,1999:52)	이쓰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 이리경찰서장 재직(1937)
4	1937년 가와무라마사미(河村正義) 이리경찰서장 총부 급습(박용덕,1999:54)	가와무라마사미(河村正義) 이리경찰서장 재직(1939,1940년)
5	1937년 8월경 조선총독부 미즈하시(三橋) 경무국장 일행이 총부방문(장도영,2017:83)	미즈하시고이치로(三橋孝一郎)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은 지바현(千葉縣)출신으로 미나미지로(南次郎)총독 부임 후 拓務次官(다나카다케오田中武雄)의 사임에 따라 후임 경무국장으로 임명(1937년-1941년까지 재직)
6	1941년 가와무라마사미(河村正義) 이리경찰서장 후임에 하시구찌료조(橋口良三) 서장이 왔다(박용덕,1999:55) 하시구찌와 고등주임 나이토사부로(内藤三郎)회기(會旗)) 불경(不敬)(박용덕,1999:87)	가와무라마사미(河村正義:1939,1940년 이리경찰서장 재직)/안사이겐지(安西謙次:1941년 이리경찰서장 재직)/ 하시구찌료조(橋口良三:1942년 이리경찰서장 재직)/나이토사부로(内藤三郎:1942년 이리경찰서 재직)
7	1942년(시창 27) 보화당 처녀살인사건 이리경찰서 고등주임 무가이사신(向井佐眞)담당. (박용덕,1999:36)	무가이사신(向井佐眞) 이리경찰서 재직기간(1937,1938년 경부보 재직)
8	1938년 이쓰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 이리경찰서장 후임 스즈키스미조(鈴木住藏) 부임 (박용덕,1999:54)	이쓰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 이리경찰서장 재직(1920,1921, 1937년)후임에는 이리에야스오(入江幹夫:1938년 재직) 스즈키사부로(鈴木住藏:1921,1934,1935,1936년 재직)

50) 蘇祈永, 『益山郡誌(上)』, 익산읍지증간사무소, 1932.

51) 김정용, 앞의 논문, 217쪽.

52) 장도영, 『두 하늘 황이천』, 원불교출판사, 2017, 247쪽.

순번	교단 내 이리경찰 관련 내용	외부 유관 기록 (『조선총독부 직원록』, 『관보』, 『익산군지』 등 유관기록)
9	마바구치(馬場口)는 시창23년(1938) 경부(警部)로 근무하였다.총부 와서 언행함부로 (박용덕,1999:56-57)	마바구치나오지(馬場口直二:1936년 이리경찰서, 경부로 재직)
10	스기야마세이끼(杉山精吉)는 이리경찰서 형사부장으로 불연 내사(박용덕,1999:56)	조선어 을중시험 합격(1942.9.1)
11	일련중 총감 구로다에카이(黒田惠海) 이리시국 순회강연(박용덕,1999:138)	인천 일련중('16.1.17),불교자혜원('44.15) 경성부 호국사 주직('37.3.24) 호남 순회강연'42.9.3-9.7
12	송종태(宋鐘泰)순사 소태산 대종사에 무례 (박용덕,1999:57)	未詳
13	김진홍(金振弘) 조선인 순사 (박용덕,1999:58)	未詳
14	육무철(陸武哲) 조선인 경찰 보안주임(박용덕,1999:58, 146)	육무철 근무처: 임실경찰서('23-'24),남원경찰서('25-29), 전주경찰서('30,'39) <u>이리경찰서(1934-1938)</u>
15	호사카(保坂民治) 순사 (박용덕,1999:120,167)	고령경찰서, 경북고등경찰과(1940-1942)
16	총독부 이나다노부히사(稲田壽生)사무관 파견 박광전의 일제충성 시험(박용덕,1999:148)	<u>총독부경무국 경무과(1928-1936)</u> 목포경찰서('37),전남경찰부고등경찰('40) 동대문경찰서(1941-1942)

위의 <표 4>에서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부 구내에 주재소 설치 관련 사항이다. 1936년에 “익산군 관내에는 이리역과 춘포면 2개소만 주재소가 있을 뿐인데 세 번째로 북일주재소가 불법연구회 총부 구내에 설치되었고 1936년(시창 21) 10월 고지마교이찌(小島京市)와 황가봉 두 순사가 북일 주재소에 파견되었다”⁵³⁾고 하고 하는데 이 보다 4년 전인 1932년경 이리경찰서 관내에 북일면 주재소는 폐지된 상태였다⁵⁴⁾.

둘째, 1937년 어느날 새벽 총독부 종교사상 단체를 총괄하는 보안과장 일행이 집차를 두 대 몰고 총부에 급습했다(박용덕,1999: 31)고 하는데 1937년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은 시모무라신(下村進:1898년생)이었다⁵⁵⁾. 그 밖에 이리경찰서 고등주임 무카이(向井佐眞) 경부보는 이리경찰서에 1937년-1938년에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1938년 총독부 경무국장 미즈하시고이치로(三橋孝一郎)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경찰부장, 고등과장, 이리서장, 고등주임, 총독부 도서과 종교 전문 관속, 신문기자 7,8명이 불법연구회 방문 (박용덕,1999:41)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본 바 미즈하시고이치로(三橋孝一郎:총독부 경무국장,

53) 박용덕, 앞의 책, 26쪽

54) 익산지역의 경찰기관: 소기영, 『益山郡誌』 상,익산읍지중간사무로,1932,10-16쪽.이리경찰서): 재 익산면 이리읍 415번지 대정8년 8월 20일 건설, 서장1인, 경부1, 경부보3, 부장4, 순사35인. 경찰관 파출소: 이리 정거장 순사4/경찰관 파출소: 익산면 이리 순사4
오산면 경찰관 주재소(순사 3/북일면 경찰관 주재소: 재북일면 신용리 현재는 폐지됨.
황등면 주재소(순사3)할라면 주재소(순사2)/웅포면 주재소(순사2)/용안면 주재소(순사3)/성당면 주재소(현재는 폐지됨)/함열면(순사3)/낭산면 주재소(순사3)/망성면 주재소(순사3)/황화면 주재소(순사2)/여산면 주재소(순사3)/금마면 주재소(순사2)/왕궁면 주재소(순사2)/춘포면 주재소(순사3)/팔봉면 주재소(순사2)/삼기면 주재소(순사2).

55)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시모무라신(下村進)은 長野縣 小縣郡 丸子町 출신으로 동경제대 법학과 졸업(1922.3) 고등시험행정과 합격(1921.11) 조선총독부에 배속(1922)되어 함북 학무과장(1923), 평남 산업과장(1924), 전북경찰부장(1932), 총독부 사무관 승진(1933)함.

1938)일행은 4명이었다(가와 마사토(及川正人):전북 고등경찰과장, 카타무라 데루오(北村輝雄):전북 경찰부장, 이리에미키오(入江幹夫):이리서장, 미조구치가네토시(溝口兼俊):고등주임, 히무라 데루오(比村輝雄):총독부 도서관). 당시 대부분의 경찰관 태도와 달리 교단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인물로는 가와무라 마사미(河村正美)였는데 그는 1939-1940년 이리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바 있다⁵⁶⁾.

셋째, 도산 안창호의 총부 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35년 여름(박용덕, 1999:22-23/김정용, 1989:216)이었다는 주장과 1936년 2월경(김도형, 2019:36)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매일신보》(1936.2.26)에 도산이 전남북도 시찰 도중 21일 오후 내전(內全) 시내를 일순(一巡)하고 금구로 했다는 기사가 있다. 그가 1936년 2월 21일 오후에 전주 시내를 한번 돌아보고 금구로 내려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산은 2월 21일 전주에 도착하기 전 익산으로 왔고 오전 중에 불법연구회 총부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⁵⁷⁾. 당시 안창호와 소태산 대종사의 대화내용⁵⁸⁾이 상황을 잘 암시하고 있다.

한편 “안도산이 총부를 방문한 후 1935년 9월경 이리경찰서장 이즈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이 조선인 순사 황가봉을 불러 지시했다. 북일면에 북일주재소 설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라(장도영, 2017:38)는 지시가 있었다. 한달도 못 되어 설치 허가가 내려왔다. 익산군 관내에는 이리역과 춘포면 2개소만 주재소가 있을 뿐이었는데 세 번째로 북일주재소가 불법연구회 총부 구내에 설치되었다. 1936년 10월 고지마 교이찌(小島京市)와 황가봉 두 순사가 파견되었다”(박용덕, 1999:26)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확인할 바는 이즈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의 이리경찰서장 재직 시기이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 이즈미가와(泉川)가 이리경찰서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1920-1921년 및 1937년이다. 그리고 1935-1936년에 이리경찰서장은 스즈키스미조(鈴木住藏:1935-1936:경부 5)이며 1937년에는 이시가와히데오(石川秀雄:경부 4)이었다. 그렇다면 총독부 직원록에 이즈미가와(泉川)의 이리경찰서 재직기간(1937년)과 위의 기록(장도영, 박용덕의 1935년) 사이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1936년 경 익산군 관내 경찰관 배치 현황에 있어 주재소 3곳은 검토할 사항이다. 1932년 무렵 익산지역의 경찰기관을 보면⁵⁹⁾ 이리경찰서는 익산면 이리읍 415번지, 대정8년 8월 20일 건설, 서장1인, 경부1, 경부보3, 부장4, 순사35인. 파출소2, 주재소는 15곳이었고 북일면 주재소는 폐지된 상태였다. 1928년 11월 익산군 관내 경찰배치를 보면 이리경찰서(일본인 29+ 조선인 15 합44)

정차장파출소(2+조2 합4), 목천리경찰관주재소 (2+1=3), 황등(2+1=3), 함라(1+1=2) 옹포(2), 용안(3), 함열(4), 낭산(2), 망성(3), 황화(2), 여산(3), 금마(2), 왕궁(2), 춘포(3), 팔봉(2), 삼기(2) 일본인 49+조선인37 합 86명이 근무했다⁶⁰⁾.

넷째, 총부에 경찰관 주재소 설치시기에 대해서이다. 교단에서는 1935년 또는 1936년 10월이

56) 河村正美는 전북경찰부 경무과(1929: 警部補), 군산경찰서(1930: 경부보), 정읍경찰서(1931-1932: 경부보), 전북경찰부 고등경찰과(경부: 1933-1936), 정읍경찰서장(1937: 경부), 김제경찰서장(1938: 경부), 이리경찰서장(1939-1940: 경부), 함북경찰부 나진경찰서장(1941: 警視), 경북경찰부 고등경찰과 과장(1942: 경시) 등을 역임함(『조선총독부 직원록』)

57) 박윤철, 「도산 안창호 선생과 소태산 대종사의 만남」, 《원광》 제531호, 2018, 11월호, 78-79쪽.

58) 『원불교 대종경』, 실시품 45장

59) 소기영, 『益山郡誌』 상, 익산읍지중간사무로, 1932, 10-16쪽.

60) 木原壽, 『益山郡事情』, 京城: 조선인쇄주식회사, 1928, 82-83쪽.

라는 주장이 있다. 김정용(1989:214), 장도영(2017:48), 이공전(1985:141) 『원불교대사전』(2013:952) 등은 대체로 1936년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당시 이와 관련된 이리경찰서장이 이즈미가와 히데오(泉川秀雄)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 이즈미가와히데오(泉川秀雄)가 이리경찰서에 재직된 시기는 1937년이다. 그리고 불법연구회 제9회 총대회회록(1937.3)에 의하면 “북일면 경찰관 주재소 건축기부금 700원(원래 1000원이었으나 이공주씨가 300원을 담당하여 잔재분 700원)에 대하여 기본재산에서 縮與할 것이냐 차입한 그대로 두고 연부상환할 것인가 갑논을박”⁶¹⁾이라는 기사가 있다. 이상의 자료에 따르면 북일면 경찰관 주재소는 1932년 전에 잠시 운영된 바 있었으나 폐지된 후 다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36년 10월 총부 구내에 경찰관 주재소 설치가 되었다는 주장의 명확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1937년에 설립되었다는 주장은 『조선총독부 직원록』, “불법연구회 제9회총대회회록” 등에 비교적 그 근거가 분명한 편이다. 따라서 1936년에 총부 구내에 경찰관 주재소 설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즈미가와 히데오(泉川秀雄)의 이리경찰서 근무 시기와 총부의 제9회 총대회기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당시 일제의 조선에서 경찰제도 운영의 근거를 보면 1군에 1경찰서, 1읍면 1 주재소를 둔 것⁶²⁾에 비하면 읍면이 아닌 특정 지역인 총부 구내에 주재소 설치하는 매우 이례적일 만큼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다섯째, 불법연구회와 일본군 관련 사항이다.

“1944년에는 지방행정 조직까지 전투사령부 체제로 예속되면서 호남전투사령관 마끼(牧)소장은 총독부에 불법연구회의 처리건을 내신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종교문제 촉탁으로 있는 일본 불교신문사 사장 나카무라겐타로(中村建太郎)에게 불법연구회의 실정을 조사하도록 일임하였다”⁶³⁾.

여기서 검토할 사항은 일제말기의 일본군의 편제 그리고 사령관 마끼소장을 비롯한 호선군 상황이다. 일제 말기의 일본군 편제를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의 일본군은 주차군, 상주군, 방면군으로 나뉜다. 주차군(駐紮軍:1910-1921년)은 일본에 상주하면서 잠시 조선으로 파견되어 주재하는 군이라면 상주군(常駐軍)은 조선에 상주하는 일본군으로 1921년 4월 완성되었다. 19사단, 20사단, 30사단이 그 예이다. 3.1운동 이후 조선군 사령관은 3월 12일 19사단장과 제40여단장에게 분산 배치를 지시하고 다음날 육군대신에게 전보를 보냈다. 그 가운데 충주, 이리, 송정리, 전주에는 보병 제80연대에서 각 1중대를 배치하도록 한다(강상덕, 『현대사자료』, 25:107-119), 이어서 1921년 3월 26일-30일 사이에 남부지방에 80연대 소속부대를 더 분산 배치하도록 한다(전북: 전주, 남원, 고창, 진안, 이리 1중대). 조선군사령부는 조선인 사회의 전쟁 동원과 관련하여 물자동원 분야를 자원 반에서 사상동원을 보도부에서 각각 전담토록 하고 사람 동원을 위해 1941년 7월 병사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육군특별지원병제도(1938.2), 학병제(1943), 징병제(1944)가 실시되었다. 육군은 병사부를 사단 및 사령부에 설치하고 소장 책임자가 군사령관, 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했다. 1939

61) 『원불교고교총간』 제6권(각항자료 편, 원불교정화사, 1974, 201-202쪽). 제9회 총대회회록(1937.3)

62) 조성택, 「일제강점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7, 2015, 94쪽.

63) 박용덕, 『천하농판』, 원불교출판사, 1999, 153쪽.

년 8월 19사단 사관구 내에 나남과 함흥, 제20사단 사관구 내에 경성, 평양, 대구, 광주에 각각 병사부를 설치했다, 따라서 전라도는 광주병사구에 속했다. 당시 사관구(師管區: 광주-19사단관구) 사령관은 시모노가주(下野一劬) 중장이었고 그 예하 병사구(兵事區) 전주 지구사령관은 마키지로(牧次郎) 소장이었다⁶⁴). 육군 병사구는 병사부령(1939.8.1. 제18호 칙령)에 근거한 것으로 1943,1945년 개편되었다. 박장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어느날 일본 불교 유지였던 나카무라(中村)와 육군 소장인 마키(牧)소장이 정산종사님을 초청하였다. 이리 청목당에서 시내 유지급 인사 수십명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 나(박장식)는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참석하게 되었다. 중략- 마키(牧)소장은 말하기를 귀 교단은 건실한 단체입니다. 앞으로 긴밀한 연락을 갖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 뒤로 찾아와서 황도불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실천하라고 강요했다”⁶⁵

한편 17방면군(方面軍)은 1945년 패전 직전에 조선주둔 상주군을 재편해 구성된 부대로 전라북도에는 160사단(이리)과 150사단(정읍)에 각각 주둔했다. 전시체제 하의 조선 주둔 일본군인 제17방면 군은 방위와 교육, 병참을 담당했던 조선군과 달리 작전을 담당했다. 남부지방에는 전라도 150사단, 160사단, 경남 120사단, 121사단(대전)을 배치했다, 160사단(호선22901) 편성지는 평양이었다. 사단장 육군중장 야마와키마사오(山脇正雄:익산군 이리읍 배치)가 이끄는 제160사단 사령부(護鮮 22902)가 1945년 5월 5일 이리읍 이리농림학교에 배치되었다. 유수명부(『留守名簿』)에 의하면 이리에 주둔한 제160사단 병력 13,883명에는 조선인이 2,751명 동원되어 있었다고 한다⁶⁶). 제160사단에는 사단본부(이리농림)를 비롯하여 464연대(이리공고), 463연대(서천), 461연대(부안), 462연대(군산)가 각각 인근에 배치되었다. 특히 이리에 배치된 연대는 제464연대였으며 160사단 통신대, 병기근무대, 야전병원, 분진포대 등이 함께 주둔했다. 보병 제464연대는 1945년 2월 28일 임시동원령 이후 장교 하사관은 3월경, 사병은 4월초에 일본 돗토리(鳥取)시의 구 보병 121연대 보충대 소집 편성에서 업무가 개시되어 5월 4일 한반도로 이동, 하카다(博多)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한 후 열차로 5월 5일 오전 5시 경성으로 출발, 평양에 도착한 것은 5월 6일 오전 3시였다. 이어서 5월 25일 평양에서 보병 464연대(연대장 스키노기요시(菅野淨)중좌)가 완성되어 5월 27일 11시50분 평양을 출발, 5월 28일 10시 이리역에 도착한다. 도착 후 이리고등여학교에서 군기봉영식(8월18일)을 가졌으며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군기 봉소식(8월 25일)을 이리고등여학교에서 가졌다. 부대 해산이 되자 동년 1945년 11월 2일 부산에 도착한 후 선편으로 일본에 복귀하기 시작하여 복귀가 완료된 것은 1946년 4월30일 이었다⁶⁷). 따라서 160사단이 이리에 주둔한 것은 (1945.5.28.-11월2일) 약152일 정도 된다. 위의 근거에 의하면 호남전투사령관 마키(牧)소장은 병

64) 조건, 「일제강점 말기 조선주둔 일본군 상주 사단의 한인병력 동원 양상과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 2015, 231쪽/김상규, 「전시체제하의 조선주둔 일본군 병사부 설치와 역할」,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신주백,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운영』, 동북아역사재단, 2021.

65) 박장식, 『평화의 염원』, 원불교출판사, 2005, 109-110쪽.

66) 조건, 「전시총동원체제기 조선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 박사논문, 2015, 151쪽.

67) 森下智, 『帝國陸軍の軍旗』, 東京: 帝國陸海軍史研究會, 2018, 49-80쪽.

사구(兵事區) 전주 지구사령관인 마키지로(牧次郎) 소장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1944년 호남지구 전투사령부가 총부 구내에 주둔, 사령관인 마키(牧)소장이 불연을 황도불교화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힘을 구사했다⁶⁸⁾는 기록에서 호남전투사령부는 바로 사관구(師管區) 광주-19사단관구로 당시 사령관은 시모노(下野一靄) 중장이었고 그 예하 병사구(兵事區) 전주 지구사령관은 마키지로(牧次郎) 소장이었다⁶⁹⁾.

이어서 “7월 25일 경에 이른바 호선군이라는 전북지구 전투사령부는 총부 정문에 걸 간판까지 준비해 가지고 와서 대각전과 양잠실을 점거했다”는 박광전의 전언과 김정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바는 호선군인 160사단 및 464연대의 움직임이다⁷⁰⁾. 이들 부대가 일본에서 편성(1945.2.28.-3.30)되어 조선으로 이동(5.4) 부산 도착(5.5), 열차로 평양도착(5.6), 임시동원 완결(5.25), 평양역 출발 이리 도착한 것은 1945년 5월 28일 오전 10시, 이리농림학교와 이리공업학교에 각각 진지를 구축, 봉소(奉燒:8.15) 봉영(奉迎:8.18), 고사(告辭:8월 20일)가 이리고등여학교에서 각각 이뤄진 것으로 보아 이 호선군 부대는 5월 25일-8월 15일까지 작전을 구사했고 1946년 4월 30일 복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이리에 머무는 동안 익산총부에 대한 모종의 압박은 충분히 짐작은 되지만 정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교단에 일본군에 대한 찬양의 압박도 있었다. 일본군 니시즈미고지로 대위(西住小次郎:1914-1938)⁷¹⁾는 중일전쟁시 전차장으로 활약하여 무훈을 거두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군신(軍神)이라고 지정된 인물이다. 《회보》에 그의 기사가 연재된 것은 신문 혹은 잡지에서 참고했다고 한 것이나 일제로부터 모종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유추된다.

끝으로 구산 송벽조 선진의 천황모독사건과 관련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및 검사, 판사들의 명단도 확인된다. 예컨대 마스이마사이치(増永正一:1882-?)는 고등법원 고등검사국에 감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들에게 훈사(《사상회보》 25,1940)를 하거나 총독부 사무관인 이나다노부히사(稲田壽生)는 박광전의 일제충성 여부를 시험한 인물이며, 이나다노부히사(稲田壽生), 아오야마료쥬(青山良三) 등은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에 근무(1939-1940)하면서 당시 구산 송벽조 선진에 대해 형법 제 74조 제1항 2에 해당되는 구형 및 형 결정을 한 검사, 판사들이다.

3. 초기 교단에 중립적인 입장의 인물

초기 교단에 중립적인 입장을 띤 인물들로는 의사들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이리병원 및 유명 의사들, 삼산병원장 김병수 등이 포함된다. 먼저, 이리병원장이었던 문치순(文致淳:1900-?)은 평남 안주군 출신으로 일본 구마모토(熊本) 의과대학을 졸업(1924)하고 8년간 이 대학에서 연구했으며 육군 군의관(중령)을 거쳐 나가사키(長崎)의대에서 산부인과 전공으로 박사학위(1938.4.30)⁷²⁾를

68) 김정용, 「일제하 교단의 수난」, 『圓佛敎七十年精神史』, 익산: 원불교창립제2대 및 대종사탄생 백주년성업봉찬회, 1989, 224쪽.

69)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東京: 巖南堂, 1963, 24쪽.

70) 森下智, 앞의 책, 49-80쪽.

71) 니시즈미 고지로 대위(西住小次郎)는 일본 구마모토 출신 일본육사 46기(1934), 사후 대위로 특진 34전투에서 무훈을 거둬 西住 전차장전, 영화 등으로 만들어 영웅칭호를 부여한 인물.Yahoo japan.

72) 문치순의 長崎대학 박사학위 논문: 「Morphinの家兎卵巢並子宮に及ぼす作用の知見補遺」(1938.4.30.) CiNii Research.

받은 전문의다. 경성의대에 교수였던 오사와마사로(大澤勝:1891-?)의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대한산부인과학회 10대 회장(1958-1960)을 역임했고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그가 전주자혜의원 의사(1923), 마약류중독치료소(1932-1936)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에서는 천성당(天誠堂) 의원을 운영(1928-1932)⁷³⁾하다가 소태산 대종사가 입원할 무렵은 그의 나이 43세로 이리병원장에 있었다. 그는 익산지역의 한국인 의사이자 유지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⁷⁴⁾. 당시 이리병원에 함께 근무한 내과 의사인 와카스키데이(若杉鼎)는 소태산대종사가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직접 치료를 담당했던 내과 의사였다. 그는 나가사키(長崎)의대를 졸업(1925)하고 이 대학에서 단년간 근무한 후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⁷⁵⁾를 받았다. 그 밖에 소태산 대종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이돈수는 이리축탁의로 활약한 바 있고(《중외일보》, 1928.7.20), 고영순(오사카:大坂)의대 졸업(1921)은 의약연구회를 조직한 인물(《동아일보》, 1935.7.21)로 이들은 당시 명망있는 의사들로 확인된다. 다만, 김병수는 김제 출신으로 일찍이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이리에 삼산의원(1922년 설립)을 운영한 의사이자 이 지역의 유지로 소태산 대종사를 진료한 주치의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그는 군산에서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바 있으며 제일교회 장로이면서 이리유치원, 광희여숙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는가 하면 교단 기관지인 《회보》에 위생에 대해⁷⁶⁾ 기고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익산 부윤(府尹) 당시(1946년) 서본원사 적산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태도는 교단에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는 광복 후 이리읍 소재의 일본 정토 진중 본파의 사찰인 서본원사를 제일교회에 불하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⁷⁷⁾.

73) 木原壽, 『익산군사정』, 전라북도 익산군청, 1928, 86쪽./소기영, 『익산군지』(상), 익산읍지중간사무소, 1932, 16쪽에 천성당의원이 확인되어 이후 이리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사료됨.

74) 예컨대 전북여고 설치기성회(《동아일보》, 1926.2.17), 익산면의원(《조선일보》1926.11.22), 익산읍의원 당선(《동아일보》, 1931.5.27), 이리생산조합조직 유치(《조선일보》, 1931.9.13.), 이리야구협회장(1《동아일보》, 1931.8.28.), 이리보통학교신축비 기부(《동아일보》, 1934.3.28), 이리읍학교평의원(《동아일보》, 1939.7.4) 등으로 활약했다. 광복 후 문산부인과의원(서울 중구다동, 《동아일보》, 1955.8.14)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75) 와카스키데이(若杉鼎)의 나가사키(長崎)의대 의학박사 학위논문: 「Digitalis屬藥物の心臟作用に對する 2-3chinaalkaloidの影響について」(1938.7.2.) CiNii Research. 《조선일보》, 1938.8.7.

76) 예컨대 김병수는 三山生이라는 필명으로 불법연구회 회부의 위생란에 16회 기고를 한 바 있다. 일광육에 대해(《회보》 55호, 1939: 410), 식물소화시간(《회보》, 50호, 1938: 302), 유아양육에 대해(《회보》 46호, 1938:251-252) 유아양육에 대해(《회보》 45:226), 유아양육에 대해(《회보》 43호:205), 분만에 주의할 점(《회보》 39호, 1937:145), 태중위생에 대해(《회보》 38호, 1937:131), 건강법칙(《회보》 35호, 1937:80), 初生兒 처지(《회보》 40호), 유아위생에 대하여(《회보》 41호), 호열자에 대하여(《회보》 43,44,45,46,47호), 일광육에 대하여(《회보》 55호) 등이다.

77) 윤경로, 「분단 70년 한국기독교의 권력유착 사례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44, 2016, 33-35쪽. 정토진중은 대곡파와 본파(서본원사파)로 나뉘는데 전자의 동본원사 이리포교소(1912.5, 구이리 144, 《조선총독부관보》 제1477호, 『朝鮮開道50年誌』)가 설치된 후 본파 서본원사 이리포교소(1917.6, 19/ 《조선총독부관보》 제1464호)가 각각 설치된다. 대곡파의 포교소인 동본원사는 1960년초 원불교 이리교당으로 사용되다 조계종 금산사의 말사인 관음사로 전환되었다. 본파인 서본원사터는 광복 후 1946년 제일교회에서 인수하게 됨(성주현, 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1, 385-387쪽).

V. 요약 및 결론

원불교 초기 교단 시기인 불법연구회 시대의 대외 인사에 관한 검토는 비단 교단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다. 적어도 인물에 대한 평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 대치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불법연구회 관련 대외 인사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교단 내외로 노출된 대외 인사라 할지라도 대·내외적으로 교차검증이 가능한 인사에 국한했다. 그 이유는 비록 일방적으로 노출된 인사라 하여도 교단 관련 검토의 중요성 못지않게 사실적 검증이 불가능한 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다음에 교차검증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는 약 50여 명의 대외 인사에 국한하여 왜 그들이 교단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배경에는 조선총독부의 관련 법규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 관련 법규나 정책을 들여다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교단 관련 대외 인사는 불교계 승려, 재가불자, 경찰, 판·검사, 언론인, 의사, 학계 등 직능별로 다양하다. 국적별로는 일본인, 조선인, 미군 등 순으로 많았다. 다만,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선 인사들은 의사였다. 그들은 소태산이 열반하기 전후로 진료를 담당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김병수는 의사이자 기독교 장로, 교육자, 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이력을 보였고 이 지역사회의 유지로 활약했고 교단 내 기관지인 회보에 위생에 대한 글을 수 차례 기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그가 이리 부윤에 부임한 후 적산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결코 중립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무라야마지준(村山智順)의 조선총독부에 보고한 『조선의 유사종교』(1935)에서 불법연구회를 불교계 유사종교로 분류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분류에 비해 전북 교육회에서 펴낸 『전라북도교육급종교』(1938)에서 취급한 종교 유사단체는 6개 교단만 확인될 정도였다. 따라서 당시 일제 당국의 입장에서 불법연구회는 주목할만한 종교 단체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1940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펴낸 《사상회보》 제22호(1940.3)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신흥유사종교’라고 지칭하고 있어 실제로 조선총독부에서 인식한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교차검증 결과 안창호의 총부방문과 총부 내 주재소 설치에 교단 내부의 기록과 외부의 그것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 첫째, 몇가지 확인된 결과를 제시하면 당시 근무한 경찰관, 선행연구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나마 안창호의 총부 방문은 1936년 2월경, 총부 주재소 설치는 1937년경으로 본다. 그리고 김태흡 스님의 총부 방문 시기도 1942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로 확인되었고 상야스님의 총부 방문 역시 1938년, 1943년 두 차례로 보인다. 그리고 황도불교화와 관련해서 일본군 병사부 사령관은 마키지로(牧次郎) 소장이며 호선군은 160사단, 464연대로 이들이 이리에 머문 기간은 1945.5.28.-8.15까지이며 이 기간에 황도불교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정산 종사는 1945년 6월경 지방 순회에 있어 위기를 모면했다. 교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배경은 소태산 대종사의 인격에 감화 또는 교리와 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에는 일제의 신흥종교에 대한 법규와 정책의 결과였다면 중립적인 입장에는 의료인들의 태도였다.

둘째, 1930년대 이후 교단에 대한 일제의 압박과 통제가 강화된 것은 중일전쟁 이후 전시 체제 돌입, 황민화 정책 등의 영향도 있지만 직접 교단과 관련해서는 무라야마지준(村山智順)

의 『조선의 유사종교』(1935)의 발행, 안창호의 총부 방문(1936)과 총부 구내에 주재소 설치(1937) 그리고 송벽조의 항소사건(1939) 등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셋째, 향후 교단에서 이들 외부인사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무엇보다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다. 교단 내에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는 청산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모로 검토하여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것은 유형화된 것도 무형화된 것도 있다. 전자는 교리나 제도, 성가 등에 깃들여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무의식적이어서 눈에 확인도 되지 않는다.

넷째, 이들 교단 관련 인물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평가와 교단 내부의 평가가 서로 다른 경우 이와 관련한 교단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교단과 관련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지만 국가 사회에서는 친일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교계 승려들은 황도불교화를 획책한 인물들로 비록 이들이 교단에 우호적이고 도움을 주었다 할 지라도 과연 당시 이들이 교단을 위한 노력과 배려가 황도불교화를 꾀하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어떻게 화학적인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광복 이후 이들 가운데 일부는 친일인사로 분류되었고 일제에 순응해야 하는 일본경찰, 일제의 고문(顧問) 등의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끝으로 교단 내 이들에 대한 기록의 교차검증을 통한보다 정확한 기록의 확보와 관리 등이 이뤄짐으로써 초기교단의 대 사회적 역할과 위상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기에 초기교단의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아울러 해석을 위해서도 자료발굴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거나 수난을 당했다고 하지만(영광, 광주, 김제, 이리경찰서, 조선총독부 경무국 등) 과연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조사했는지 기초자료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전라북도 내무부 학무과에 불교정전(『佛敎正典』)발행 허가를 신청한 원본과 아울러 일제가 불허를 지목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불허한 사항이 기재된 원본 확보가 시급하다. 이런 자료 확보와 연구는 교리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이리병원 내과 의사들의 대종사 진료부, 전제 동포구호사업 신청서류와 허가의 경위, 김구 주석을 만나 정산종사 일행이 낭독한 임정 지지 성명서 등도 확인이 요구된다.

* 발표문에서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원불교 군종승인의 역사와 의미 탐색

—원불교 군종활동허가청원 백서를 중심으로—

강동현
원불교 군종교구

차 례

- I. 서론
- II. 원불교 군종승인의 역사
- III. 원불교 군종승인의 의미
- IV. 결론

I. 서론

1950년에 대한민국 군종제도가 시작되었다. 첫 참여 종교는 개신교 4개교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과 천주교였다. 이후 1968년에 불교(조계종), 2006년에 원불교가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원불교의 참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3대 종교에 의한 ‘준(準)독점 체제’에서 ‘종교적 다원화’로 큰 진전이였다.¹⁾

군종승인 이후에 원불교 군종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다. 군종장교 증원, 종교시설 기부채납 및 전환, 전담 민간성직자 활동 확대, 군종장교 영관 진출, 초급장교 양성기관 활동거점 확보, 전시 군종활동, 군종병과 각종TF 참여, 국방힐링캠프 주관 등으로 군내 원불교 군종의 역할을 정립하고, 종교간 화합과 장병들의 신앙전력화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원불교 군종승인의 의미는 ‘소수종교의 대표성’에서 큰 진전이 없는 듯하다. 특히, 군종승인 이후 내부적으로 확장과정(인적·물적 관리)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외부적으로 변화하는 군환경(종교와 인권, 팬데믹 이후)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확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오늘의 원불교 군종은 새 정책을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과제 해결의 방법으로 「원불교 군종활동허가청원허가백서(이하 백서)」에서 방향을 찾고자 한다. 백서는 총 4권으로 교정원에서 발행하였다. 이 백서가 갖는 의미는 원불교 군종승인 전후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제한 점은 2007년 12월까지 자료결집의

1) 강인철, 『종교와 군대』, 현실문학, 2017, 67쪽.

형태라 자료 분석이 필요하고, 일부출처가 모호하며, 비공개 자료가 많다.

이에 따라 백서 탐색을 통해 첫째, 군종승인의 역사를 통해 원불교 군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체성 확립은 원불교 군종의 존립 이유가 될 것이다. 둘째, 원불교 군종승인의 의미를 추진전략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원불교 군종의 새 정책연구와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II. 원불교 군종승인의 역사

1.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의의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이하 ‘군종편입종교’)란 군종장교를 파송하는 종교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법 제58조 1항과 3조, 7항<표2-1>’은 개신교(목사), 천주교(신부), 불교(승려), 원불교(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활동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군종편입종교’ 선정 권한을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표2-1> 병역법 제58조의1, 72)

병역법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군종) 분야의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⑦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 제2항<표2-2>’은 ‘군종편입종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①보편적 교리와 조직 ②성직의 제도화 ③군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 ④종교의 규모와 역량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군종편입종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2) 병역법 제58조 제1항은 1993년 12월 31일에 전부개정이 되었다. 이후 11차에 걸친 개정소요가 있었다. 그러나 4차(2002년 12월 6일)개정에서 ‘군종편입종교’ 선정기준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자격기준, 선발심의를 위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표2-2> 병역법시행령 제118조의2³⁾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일부개정]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군종편입종교’로 선정되어 활동하는 종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이다. 그러나 선정순서는 종교별로 다르다. 개신교(1950년), 천주교(1951년), 불교(1968년), 원불교(2006년) 순이다. 여기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는 현행 병역법에 의거 하여 선정된 종교가 아니다. 원불교가 유일하게 적용되어 선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종편입종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 제도권 종교의 진입기준을 만들어 왔던 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와 진입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든 종교(원불교)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군 제도권 진입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등장과 원불교의 대응 과정에서의 시사하는 점이다.

2. 군 제도권 정착 과정과 원불교

‘군종편입종교’로 선정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 분야의 현역 장교(군종장교,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받아 파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종교들은 종교와 정치, 종교와 전쟁, 종교와 인권, 군내 교세 확장 등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 성장과 갈등을 통해 군 제도권에 정착하게 된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군 제도권 정착 과정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① 군내 정착을 위한 종교별 기여 ②종교와 정치의 협력 ③교세확장의 장이며, 차이점은 ①종교의 정체성 ②종교와 전쟁의 영향 ③독점과 다원화이다. 아래의 <표2-3> 공통점과 차이점의 세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2-3> 군 제도권 정착 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 분		개신교 (1950년)	천주교 (1951년)	불교 (1968년)	원불교 (2006년)
공 통 점	군 기여	정훈활동 및 무보수 촉탁	무보수 촉탁	불교종군포교사회	도서보내기 운동
	정치협력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교세확장	선교의 장	선교의 장	포교의 장	교화의 장

3) 본조는 2003년 9월 15일이며,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58조 제1항이 2002년 12월 26일에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신설되었다.

구 분		개신교 (1950년)	천주교 (1951년)	불교 (1968년)	원불교 (2006년)
차 이 점	정체성	외래종교	외래종교	외래종교	민족종교
	파송시기	한국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평화조성
	독점/다원화	독점/교파 다원화	독점	독점	종교 다원화

흔히 군종병과는 전시에 탄생한 병과라고 말한다. 그리고 개신교, 천주교, 불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통해 군 제도권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불교는 민주정부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조성하는 시기에 군 제도권에 정착하였다. 그 결과, 원불교는 소수종교의 대표성과 군내 종교 다원화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원불교가 군 제도권 정착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기존에 정착한 종교들의 기득권, 교단 내 시기별 제도권 진출에 대한 관심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대정부교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발아기(1966) ②1차 추진기(1975~1987) ③2차 추진기(2001~2003) ④총력기(2003~2006)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표2-4>는 원불교 추진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2-4> 원불교의 군 제도권 정착 추진과정

구 분	활동	비고
① 발아기	대정부교섭(1966년 2월)	원불교 교사
② 1차 추진기	1차 청원(1975년 1월)	국회
	2차 청원(1975년 9월)	국방부
	3차 청원(1979년 6월)	국방부
	4차 청원(1980년 12월)	대통령, 입법위원회, 국방부
	5차 청원(1983년 7월)	대통령, 국방부
	6차 청원(1986년 10월)	국회
	7차 청원(1987년 12월)	대통령
③ 2차 추진기	군종추진위원회 구성(2001년)	추진모임 구성(1999년)
	8차 청원(2001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부
	병역법 개정추진(2002년 5~11월)	개정법령(2003년 3월 시행)
	병역법 시행령 개정관리(2003년 1월~9월)	
④ 총력기	군종특별교구 신설(2003년 10월)	
	군종편입종교 선정 요청(2004년 12월)	국방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2005년 8월)	국방부(결과:부결)
	개인·단체 항의 시작(2005년 9월~)	기도회, 시위, 인권위원회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2005년 12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2006년 3월)	국방부(결과:승인)

원불교의 군 제도권 정착 추진과정에서 주요 과업은 발아기는 군종의 필요성, 1차 추진기는 대정부 청원, 2차 추진기는 병역법 개정, 총력기는 ‘군종편입종교’ 선정이었다. 교단 내 관심에 있어서 발아기와 1차 추진기는 불교의 영향⁴⁾과 군내 전군 신자화 운동, 2차 추진기와 총력기는 당시

4) 불교는 1964년부터 군종법사제도 설치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1975년 석존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원불교는 당시 대한불교총연합회의 창립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좌산 이광정 종법사(1936~현재, 이하 좌산)의 원력⁵⁾이 바탕이 되었다.

Ⅲ. 원불교 군중승인의 의미

1. 추진전략과 방향

백서 1권의 머리글에 “12년 동안 공개적인 청원은 하지 않고 여건조성에 노력하다가 이제는 주변 환경이 과거보다는 우리에게 우호적이라는 판단하에”⁶⁾라고 밝히며, 범교단적으로 군중추진위원회(2001년)를 결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차 추진기의 선언이며, 군중승인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표3-1> 1차 추진기의 환경분석과 대응전략

1차 추진기 (1975~1987)		
내부 요소	강점	①군중활동에 부합되는 교리, 교서(서적), 의식과 의례 ②국가에서 인정한 종립학교와 성직자 양성제도 완비 ③원불교 신도 수(70~100만) ④세계교화 진출(미국법인설립) ⑤ 민족종교이면서 범불교
	약점	① 군내 3개 종교의 독점 ②표면적 원불교 신자확인의 제한
	선호가치	①정부의 국가운영방향과 일치(가정의례 준칙, 새마을 운동 등) ② 군중 층원 문제 해결(불교)
외부 요소	군	①부대내 종교행사(예회) 지원 ②부대내 방송교화 지원
	정치	①조국근대화에 기여 ②범불교적 유신활동 인정
	협력자원	①언론, 문화, 체육, 정치인 등 지지 ② 단체(문화공보부 등)의 지지
쟁점	군	①군내 신자수 적음 ②유사종교 진출 유발 ③군내파벌유발
	원불교 대응	①민족종교 참여보장(우리 것 푸대접) ②법제제반요건충족(종립대학, 종교인구) ③기득권 종교의 독점(헌법의 '종교평등'정신 위배) ④병역법 개정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⑤군내 신자 수 명단 확보 및 제시

1차 추진기의 대응전략에서 유의미한 시기가 있다. 바로 4차 청원이다. 이 시기는 10. 26 사태(1979년) 이후로서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원불교는 위기를 기회로 판단한 듯하다. 원불교는 대응전략을 범불교 소속종단에서 민족종교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법령개정안의 제시, 군내 신자 수 명단 확보를 추진하게 된다.

2차 추진기부터는 교단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총결집되어 추진하게 된다. 1999년에 수립된 추진전략은 ①민족종교로서 정체성 강화 ②대정부 및 이웃 종교와 우호적 관계 유지 ③군내 종교 활동을 신앙전력화 측면으로 부각 ④청소년 인성교육 실적 관리로 세우게 된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법령개정을 우선 추진(2001년)하게 된다.

대정부교섭(8차 청원⁷⁾), 법령개정과 함께 원불교는 군중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2002년)

5) 교화부에 근무시 군교화를 해보니 잘되었다. (중략)그러던 중 군종과의 간섭으로 군교화를 계속 할 수 없어 우리도 정식으로 군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중략) 그리하여 각계로 청원을 했다.(좌산, 군중추진회의, 1986. 5. 23)

6) 『원불교 군중활동허가청원 백서』 제1권, 원불교 교정원, 1쪽.

하고, 동시에 군내 신자 명단 파악과 입교운동을 전개하여 추진동력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각 요인들에게 원불교의 의견을 전달 및 설득하여 법령개정(2002~2003년)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원불교의 진입은 이후 3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총력기의 전략은 새 법령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종편입종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했다. 원불교는 군종특별교구(2003년)를 설치하고 국방부에 군종장교임용과 종교시설 기부채납승인, 민간성직자 활동 요청을 통해 군내 진입을 노력했다. 그러나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2005년)’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원불교는 ‘종교허가관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전략은 총 5단계이며 ①‘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개최 ②전방위 외교 ③구성위원 설득 ④‘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교단대표 참석과 입장피력 ⑤통과 시 후속 처리 실시, 유보 시 항의 불사⁸⁾로 준비 및 조치를 했다. 그 결과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재개회 되었고, 상정된 종교 중 원불교가 ‘군종편입종교’로 선정되었다.

2. 추진전략과 의미

‘군종편입종교’로 선정되고, 좌산은 “군종문제 해결에 출가-재가 및 각계각층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성공시킨 실로 제2의 법인성사”라 하며 “3월 24일은 양계의 법인성사”라 하였다.⁹⁾ 이는 1966년부터 추진된 40년의 결실의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군종편입종교’로 선정된 2006년 3월 24일의 실제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총력기는 군과 군내 제도권 종교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과업을 해결해야 했다. 그 과제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선정의결이었다. 원불교는 2005년 8월에 선정되지 못한 뒤 추진전략에 따라 전방위로 노력을 하였다. 특히,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종교허가관철전략 5단계가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표3-1>은 주요사항을 나타낸다.

7) 8차 청원시 군의 입장: ①군내 신자수 2만명 이상 충족 ②유사종교단체와의 형평성

8) 『원불교 군종활동허가청원 백서』 제2권, 원불교 교정원, 312쪽 요약.

9) 『원불교 군종활동허가청원 백서』 제3권, 원불교 교정원. 군종문제해결의 핵심주역.

<표3-1> 종교허가관철전략 5단계 추진사항

통과 시 후속처리, 유보 시 항의불사 (2005. 8. 19 ~ 2006. 3. 26)			
년월일	내용	비고	
2005. 8. 19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부결(사유:①군내 신자수 ②소수종파 진출)	
후 속 처 리	2005. 9. 3	원불교 군간부 교도훈련	원불교 군간부 교도회/지역별교화단 결성
	2005. 9. 3	원불교 군종 홈페이지 개통	군교화 추진 및 정보교환
	2005. 9. 30	군교화 추진기획단 구성	3단계 목표(군내 종교활동→선정→선발)
	2005. 12. 11	육군훈련소 예회 실시	교무 주관 첫 예회 *훈련소 출입허가 공문 발송(6. 3)
2006. 1. 16	육군훈련소 전담교무 발령	전담교무(1월 22일 첫 예회 주관)	
2005. 10. 14	국방부 주요인사 면담	예비교무 군투위	
2005. 11. 29	원불교예비성직자기도회	소수종교차별 군종제도 철폐 요구(국방부 앞)	
2005. 11. 30	1인시위(국방부, 계통대)	원불교 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항 의 불 사	2005. 12. 1	국방부 주요인사 면담	군교화추진기획단
	2005. 12. 5	원불교 단체 기자회견	원불교 인권위원회 주관
	2005. 12. 1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차별적 군종제도 철폐 진정서 접수
	2005. 12. 20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군종편입종교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5. 2. 15	1인시위 회향식	서울교당(국방부 앞)
	2006. 2. 22	군종문제전문가간담회	김성곤 의원 주관
	2006. 2. 28	군종관계정책자문회의	원불교의 군종편입종교 선정과 군종장교 승인 가능성 검토
	2006. 3. 10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사건명 20062125

원불교는 후속처리와 항의불사 두 전략을 상충관계(Trade-off)로 설정하지 않고, 동시달성으로 추진했다.¹⁰⁾ 후속처리와 연계하여 2차 추진기부터 교재개발, 인재양성, 대군봉사, 군교화실시, 조직정비, 지원 및 홍보를 지속 강화하였다. 그 결과 항의불사 전략에서 후속조치의 인적·물적 자원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 청구는 원불교 군종승인의 당위성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기회이기도 했다.¹¹⁾ 그 당위성은 군내 종교의 자유보장과 평등으로 소급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불교는 ①민족 종교 배제의 부당성 ②성직자 양성 기관의 우수성 ③국제적 종교로서의 위상 ④원불교 교리와 군종제도의 부합성¹²⁾을 바탕으로 ‘수의 논리¹³⁾’로부터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10) 『원불교 군종활동허가청원 백서』 제2권, 앞의 책, 350쪽. 군종문제 해결의 핵심주역, 원불교 교정원 근본적으로는 군종장교의 인원을 배정 받는 일이나, 이는 법적요건은 갖추어졌으므로 절차를 따라 불원간 이루어질 것이니 이에 상관없이 군 교화는 교단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해야 하는 일이므로 교단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취급하여 지금부터 당장 착수해야 할 다음 일을 제시하여 교단 상하좌우 출재가가 일심 합력하여 가기로 한다.

11) 『원불교 군종활동허가청원 백서』 제3권, 앞의 책, 174~175쪽. ①군내 종교자유 보장 ②종교생활을 통한 군 정신전력을 강화 ③종교생활을 통한 정신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고예방과 명량한 병영생활의 형성에 도움

12) 『원불교 군종활동허가청원 백서』 제3권, 앞의 책, 242쪽.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 원불교 교단 소견 요지.

13) 1차 추진기에는 선정기준이 국내 신자수 10만 명이었으나, 2차 추진기에는 ‘군종편입종교’ 선정

이를 바탕으로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종승인은 원불교 창립 정신을 극대화한 시기였다. 추진과정에서 군종승인의 당위성이 정립되고 구성원의 협력과 군 교화 필요성이 교육되었다. 둘째, 군종승인은 보편종교로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미래교화의 장을 마련한 사건이었다. 추진과정을 통해 원불교의 정체성과 교화대상의 확장성을 갖게 되었다.

IV. 결론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이 주창한 정신개벽이 군 제도권에서 장병들의 무형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원불교 교리 대부분이 (중략) 국가관 및 사생관 확립, 군 복무 자긍심 함양, 상명하복의 정신 고취 등 장병 정신전력 및 군복무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이라 밝히고 있다.¹⁴⁾

원불교 군종의 정체성은 정신개벽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유일한 선행연구인 「원불교 군 교화 전략의 새로운 모색(2006년)」에서 장하열은 '개교의 정신을 중심으로 군종활동 전략을 수립하자'는 주장과 일치한다. 좌산은 '자비가 가장 절실한 곳이 군사회'로 규정하고 '교법정신'으로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⁵⁾

이를 바탕으로 이상의 탐색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함으로써 원불교 군종의 정책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군내 원불교 정체성을 정신개벽에 바탕 한 민족 종교와 함께 열린 종교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진입 시기에 강조한 민족 종교로서 원불교의 장점과 열린 종교로서 생활불교의 장점을 연구하여 차별화 전략과 경쟁우위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교리 및 정책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평화를 수호하는 시기에 진입한 원불교는 적과 싸워 이기는 무형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함양으로 수준 높은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군 복무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수준 높은 원불교 군교화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을 요구한다.

셋째, '군종편입종교'선정과정의 추진전략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 시기에 느낀 구성원들의 효능감과 군 교화 필요성을 발전 및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불교 군종과 관련한 역사정리 및 연구가 있어야 하며, 원불교 군종 관련 종사자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한점은 원불교 군종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 것이 군내 군종의 기능과 유용성 측면의 적절성 여부이다.

* 발표문에서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조건에 군내 신자수 2만 명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과 부대내 신자수 2%가 충족되어야 민간성직자를 초빙할 수 있는 법령을 극복해야 했다. 최종적으로 2006년 총인구 대비 2% 이상, 군내 신자수 1% 이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되, 선정 종교에 한하여 군내 신자수가 미달 될 경우에 의무적으로 1명의 군종장교를 배정하는 특례조항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원불교는 군종장교 1명을 파송하게 되었다.

14) 『원불교 군종활동허가청원 백서』제2권, 앞의 책, 120쪽.

15) 좌산은 2017년에 군 전담교무들에게 「군종교무의 길」로 표준을 제시하였다.